

4·3 7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제주 4·3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2018년 11월 15일(목)

제주칼호텔 2층 연회장

주최 :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주관 :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프로그램

13:00~13:20	등록 Registration	
13:20~13:50	개회식 내빈소개 사회 : 강호진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회 집행위원장) 개회사 고병수(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이사장) 환영사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 기념촬영	
13:50~14:00	휴식 Break Time	
제1부 1st Session		
14:00~15:30	좌장	김태윤(제주연구원 선임연구원)
	발표	피해자의 ‘고유성’과 기억주체의 ‘개별성’ 및 ‘집단성’ :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를 누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 김민환(한신대학교 교수)
		집단묘지의 공간에 투영된 1980년 5월의 상흔 - 정호기(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토론	- 염미경(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김은희(제주4·3연구소 연구실장)	
15:30~15:50	휴식 Break Time	
제2부 2nd Session		
15:50~17:20	좌장	- 황석규(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 원장)
	발표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 제사의 전승과정 : 면접 조사 결과 - 김석윤(공공정책연구소 나눔 소장)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 제사의례 연구 - 현혜경(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토론	- 강성민(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 4·3특별위원회 위원) - 오승익(제주4·3희생자유족회 안덕지회장)	
17:20~17:30	폐회 및 만찬 Closing and Congress Dinner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 병 수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이사장

70년 전 그 해 봄, 제주에는 역사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 외침은 희미하게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풍으로 인한 생채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주4·3 70주년은 그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제주사회가 함께 뛰어 다닌 해였습니다.

도민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4·3을 기억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지나간 시대와 다시 마주 앉아 동백꽃으로 기억되기를 실천해 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개인의 삶을 넘어 거대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살아가야했던 그 기억과 공감하는 자리입니다. 4·3 유족들의 아픔이, 아픔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개개인마다 세월이 가면 잊혀져 버릴 기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슬픔만의 기억이 아니라 세월을 품고 내일로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자리입니다.

‘과거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사례 등을 발표해주시기 위해 먼 길 오신 김민환 교수님, 정호기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염미경 교수님과 현장에서 4·3의 진실을 위해 헌신해 오신 김은희 제주4·3연구소 연구실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비롯해 함께 준비해 주시고 연구 작업을 해주신 김석윤 박사님, 현혜경 박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4·3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강성민 도의원님과 오승익 제주4·3희생자유족회 안택지 회장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과거의 기억을 넘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망각을 강요당해 왔던 역사에서, 기억의 전승을 통해 제주4·3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2018년 11월 15일

오 임 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 유족회장(권한대행)

제주4·3 70주년인 올해를 전후로 4·3에 대한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끊임없는 토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제주4·3 해결에 대한 수많은 과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등한시 했던 직계가 존재하지 않는 4·3무연고 희생자에 대한 기억 또는 기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국내의 사례를 통하여 향후 제주 4·3의 기억의 방법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4·3의 광풍에 휩쓸려 비운에 가신 희생영령들을 모시는 일은 당연히 남아있는 유족의 몫입니다. 하지만, 갖가지 이유로 인해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고 묘소를 관리하면서도 현 특별법 상 규정되어 있는 유족의 범주에 속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소위 무연고가 되어 버려 제사를 비롯한 기억의 형식마저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더욱이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며 세대가 전승되어 갈수록 무연고 희생자는 점점 더 많아질 추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동안의 좁은 시각을 벗어나 4·3원혼들에 대한 진정한 추모와 위령의 개념이 바로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우리 후손들의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항상 제주지역의 현안에 대하여 슬기로운 해법을 제시해주시는 제주대안연구공동체의 고병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수많은 사업을 집행함에 헌신하시는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사가 제주4·3해결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15.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2018년 한 해가 이제 한 달 보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제주의 기억은 4·3입니다.
70주년을 맞아 각 분야에서 다양한 추모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가슴에 단 동백꽃으로 물든 한 해였습니다.
학술분야에서 국제학술대회를 비롯해 4·3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제주4·3은 망각을 강요당해왔던 기억이었습니다.
그 외침은 잊혀져가고 있지만, 광풍으로 인한 생채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 당대 시대와 연결되어 있듯이, 이를 기억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강요에 맞서 진실의 기억을 찾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슬픔을 머금었지만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은 이어져 왔습니다.
그 움직임들이 모여 이 땅에 평화의 꽃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꽃이 진 자리에서 다시 생명의 움트는 봄을 틔우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4·3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주제로 마련했습니다.
특히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인을 넘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이를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억의 사례를 함께 공유해 보고, 제주 4·3의 방향을 모색하는 일은 학술적으로나 현실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준비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병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이사장님과 후원해주신 제주특별자치도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제주 4·3 70주년, 기억의 끝이 아니라 다시 기억 투쟁을 시작하는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정 민 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

반갑습니다.

제주4·3,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참 쉽지 않은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4·3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념하는 문제는 시대가 바뀌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3의 성격과 제사를 모시는 집안 풍속, 사회변화를 받아들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4·3의례는 국가의례인 추념식부터 마을의례 및 공동의례, 각 가정에서 추모하는 개인의례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당시 희생자 가운데 대부분의 어린이와 여성은 개인의례에서조차 기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여성이라고 해서 생명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받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직계 후손이 없음으로 인해 제사가 끊기거나 앞으로 끊기게 될 집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4·3희생자의 제사와 분묘를 관리하지만 4·3유족으로 불리지 못하는 유족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제주사회의 공식 의제로 제시된 부분에 주목 합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완벽한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씩 묶인 매듭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묶인 매듭이 풀려야 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매듭을 찾아내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4·3특별위원회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일을 하고자 합니다. 4·3기억, 계승의 문제와 같이 유족의 실질적인 고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목 차

개회사	4
-----------	---

환영사	5
-----------	---

제 1 부

〈발표 1〉 피해자의 ‘개별성’과 ‘집단성’, 기억주체의 ‘개별성’과 ‘집단성’ :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를 누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13
--	----

- 김민환 한신대학교 교수

〈발표 2〉 집단묘지의 공간에 투영된 1980년 5월의 상흔	27
---	----

- 정호기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제 2 부

〈발표 3〉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 제사의 전승과정 : 면접 조사 결과	49
---	----

- 김석윤 제주공공정책연구소 나눔 소장

〈발표 4〉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 제사의례 연구	67
---------------------------------------	----

- 현혜경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제 언	87
-----------	----

4·3 7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제주 4·3,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제1부

1st Session

4·3 7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제주 4·3,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제1부

〈발표 1〉

피해자의 ‘고유성’과 기억주체의 ‘개별성’ 및 ‘집단성’

: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를 누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김민환

한신대학교 교수

피해자의 ‘고유성’과 기억주체의 ‘개별성’ 및 ‘집단성’: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를 누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김민환(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

1. 제주4·3평화공원의 위패봉안소에서 피해자의 ‘고유성’은 확인될 수 있는가?

전후 일본을 대표하는 시인의 한 사람인 이시하라 요시로(石原吉郎)는 제노사이드에서 피학살자 수의 많음보다 더 끔찍한 것은 인간의 죽음이 숫자로 환원되어버리는 상황일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제노사이드의 끔찍함은 단숨에 많은 인간이 살육당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이 없다는 것이 나에게 (더욱) 끔찍한 일이다. 피해당한 인간들이 결국 자립하지 못하고 그저 집단에 지나지 않을 경우에는, 죽음에 당면해서도 자립하지 못하고 집단인 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죽음이 단지 숫자일 때 그것은 절망 그 자체다. 인간의 죽음에 관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시하라 요시로(石原吉郎), 1972, 『망향과 바다』¹⁾

이시하라의 말에서 제노사이드에서는 필연적으로 두 번의 죽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압도적인 폭력에 의해 생명을 잃는 것이 첫 번째 죽는 것이라면, 피해자의 ‘고유성’이 망실되어 버리는 순간은 두 번째 죽는 것이다. 여기에, 피해자의 고유성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세운 비석이나 비문이 망가지는 순간 발생하는 피해자의 세 번째 죽음을 추가할 수 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국가폭력 피해자의 ‘세 번 죽음’은 그리 드문 것은 아니다. 제주의 ‘백조일손지지’와 거창의 ‘거창사건추모공원’은 이 세 번의 죽음이 잇달아 발생한 가장 상징적인 장소일 것이다.

거꾸로, 최초의 생물학적 죽음은 되돌릴 수는 없어도, 만약 엄청난 수의 피해자 하나하나의 고유성을 복원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죽음으로부터는 피해자를 구해낼 수는 있게 된다. 우리가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에서 희생자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억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

1) 우에노 나리토시, 정기문 역, 2014, 『폭력』, 산지니, p. 23에서 재인용.

이며, 과거사사건 해결 과정은 희생자들에 대한 증언을 통해 죽은 자들이 '이 곳'에서 꿈꾸고 고통받으며 살아가다 '억울하게' 학살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주4·3사건에서 피해자의 이름 하나하나를 (되)찾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8년경부터였다. '죽은 자'를 두 번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이들을 고유한 개인으로 기억하는 일의 책임을 우선 감당한 사람들은 '살아남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또다른 피해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었지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죽은 자에 대해 말할 의무를 스스로 지고 있었고, 조심스럽게 죽은 자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고자 했다. 그들이 죽은 자에 대해 남긴 이야기들은 이 시점부터 공동체에 기록되기 시작했다. 제주4·3연구소가 1989년과 1989년에 각각 펴낸 『이제사 말함수다』 1·2나 『4·3은 말한다』 같은 책은 이런 작업의 전범(典範)과도 같은 것이며, 4·3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무수한 인터뷰는 그 작업의 계승이다. 제주도의회 출범 이후 자체적으로 이 '이름'들은 조금씩 공식화되기 시작했고, 1998년 <4·3특별법>의 통과와 2005년 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소가 증축·완공 이후 국가의 '공인'도 받았다.

그런데, 고유성을 되찾은 이들의 이름을 한자리에 모아 놓으면, 수가 너무 많아 다시 그 수에 압도되어 버리는 역설이 발생했다. 1만 5천 명 이상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제주4·3평화공원의 위패봉안소에 희생자의 이름은 개별적으로 올라있지만, 그 위패들 속에서 개인의 고유성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렸지만, 이름이 너무 많아 오히려 그 이름의 고유성이 훼손되는 비극. 이것이 제주4·3사건을 포함한 대량학살 사건 피해자를 기억하는 것의 어려움의 원천이다.

2. 배제된 혹은 '복원'되지 못한 이름들

그러나, 여전히 '복원'되지 못해 고유성이 부정된 이름들이 존재한다. 2006년 제주4·3평화공원의 위패봉안소에 안치되어 있던 9명의 위패가 철거되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신고된 희생자가 중복되었거나 해당 유족이 희생자 신고를 철회했기 때문에 필요없는 위패를 뺐다"²⁾는 것이었다. 희생자 신고가 중복되

2) 고성만, 2008, 「4.3위원회의 기념사업에서 선택되고 제외되는 것들」, 『역사비평』 통권82호, p. 161에서 재인용.

어 위패가 두 개 이상이라면 중복되는 것을 철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족이 신고를 철회했기 때문에 그 위패가 철폐되었다는 설명은 그 사정이 매우 복잡해 몇 단계를 거쳐야만 이해할 수 있다.

9명이 포함된 위패봉안소의 위패는 2005년 3월 25일 위패봉안소의 증축 완료 직후에 설치되었다. 유족들의 요구에 의해 기존의 위패봉안소보다 10배 늘어난 이 위패봉안소에 위패를 봉안한 사람들은 제주4·3실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제주4·3실무위원회 차원에서 희생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4·3위원회에서 제주4·3실무위원회가 제출한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의·의결 요청서를 심사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판정할 기준이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4·3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사기준을 설정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제주4·3실무위원회가 희생자 및 유족으로 판정한 기준과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제주4·3실무위원회는 희생자로 인정했지만, 4·3위원회에서는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생겨 났다. 이들에 대해 제주4·3실무위원회는 신고한 유족을 설득하여 신고를 철회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이들 9명의 위패는 위패봉안소에서 철폐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4·3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희생자 심사기준을 마련할 때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무장대 출신으로 제주4·3사건 당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들이었다.

이들을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강경하게 문제제기한 사람들은 제주4·3사건을 여전히 ‘폭동’으로 간주하고 있던 세력들이었다. 이들은 4·3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거나(2000년), 『진상조사보고서』와 이를 근거로 한 대통령의 사과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2004년). 또한 국방부는 『진상조사보고서』 통과 이후에도 『6.25전쟁사』에서 여전히 제주4·3사건을 ‘무장폭동’이라고 서술하려고 시도했다(2004년).³⁾ 이들의 시도는 대부분 좌절되었다. 4·3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및 『진상조사보고서』 채택과 대통령 사과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각 헌법재판소에 의해 각하되었다. 『6.25전쟁사』에서 제주4·3사건을 ‘공산폭동’이라고 서술하려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수용했다. 이들의 이런 움직임은 여전히 제주4·3에 대한 ‘폭동론’적 시각이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이들이 무장대 출신의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를 희생자로 간주하는데 동의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었다.

3) 여기에 대해서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8, 『화해와 상생: 제주4·3위원회 백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pp. 123-127을 참조할 것.

2000년 4·3특별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001년 9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를 다수 의견으로 각하시켰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런 결정을 하면서 다만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4·3희생자로 볼 수 없는 몇 가지 기준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① 4·3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② 무장유격대 수괴급 지휘관 또는 중간간부 ③ 진압군경 및 가족 등을 살해한 자,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주도한 자 등으로 요약되었다.⁴⁾

헌법재판소의 이런 권고는 4·3위원회의 희생자 심사 기준 결정과정에 결정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중시하지 않으면 가해자 측에서 위헌 소송 등 여러 방법으로 위원회 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⁵⁾ 4·3위원회의 군경 측 위원들은 현재의 권고안을 토대로 더욱 강화된 심사기준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법조계와 학계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과거의 왜곡된 기존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편향성이 있다고 보고 이보다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2001년 11월 27일부터 심사 기준안 제정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논란만 거듭되었다. 그 과정에서 '폭동론'을 주장하는 보수단체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해서 강화된 심사 기준 제정을 촉구했으며, 반대로 제주도의 4·3유족 600여명은 무장대 출신자들을 희생자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제주도 내부에서는 무장대 출신자들의 배제라는 움직임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2002년 1월 25일 '제주4·3희생자 선정기준 논란에 따른 긴급토론회'에서 김두연 당시 제주도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은 4·3특별법은 "특정한 잣대로 희생자를 선별하는 법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 상생과 자비, 사랑의 큰 틀에 의해 반세기 동안 구천을 헤매고 있는 원혼들의 넋을 달래"⁶⁾는 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무장대' 출신 희생자를 배제한다면, 4·3특별법 제정 당시의 제주도민의 열망에 반하는 또다른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의 유족들에게는 그동안 대물림된 고통을 연장하고 강화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김두연이 우려한 '또다른 혼란과 갈등'은 그 뒤 여러 과정에서 현실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잣대에 의해 희생자가 '선별'되면 원래 4·3특별법의 입법취지는 무너지는 것이 당시 제주도민들의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따라서 제주4·3실무위원회에서도 이런 취지를 바탕으로

4) 위의 책, p. 167.

5) 고성만, 앞의 논문, p. 164.

6) 김두연, 2002, 「제주4·3희생자 선정 기준과 관련된 유족들의 입장: 4·3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라」, 제주4·3희생자 선정기준 논란에 따른 긴급토론회 발제문, p. 19.

희생자의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여, 그 사람의 죽음이 제주4·3사건과 관련만 있으면 희생자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위패를 위패봉안소에 안치했었다.

제주도 내부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4·3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희생자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①제주4·3사건 발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②군경의 진압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수괴급 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 자로서, 현재 우리의 헌법체제 하에서 보호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희생자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되, 이 경우 그러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⁷⁾ 이로서 제주4·3사건 희생자들은 ‘선별’되어야만 했다. 이제 국가기구인 4·3위원회는 희생자들의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심사하는 판관이 된 것이다.

제주4·3사건의 희생자 선정 기준이 확정되자 제주도 내의 유족회 등 4·3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하였다⁸⁾. 4·3특별법의 취지를 퇴색시킨 것이라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희생자 기준이 확정되어 사실상 4·3위원회에 의해 희생자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자 제주4·3실무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인정받은 사람들 중 무장대 출신 희생자 유족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남게 되었다. 하나는 희생자 신고를 ‘철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끝까지 심사를 받는 것이었다. 4·3위원회의 군경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희생자 제외 대상 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대상자의 유족들에게 신고를 철회하도록 권고했다. 그들이 신고 철회를 권고한 이유는 “희생자 심사에서 ‘불인정’될 것이 분명한데, 그들에게 불명예를 안겨줄 수는 없었다.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희생자 선정 기준 제외 대상자들을 ‘불인정’ 결정해 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차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⁹⁾는 것이다. 4·3위원회 민간인 위원들의 이런 권고는 당시 상황에서 평가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3위원회 심사에서 희생자로서 불인정되면, 향후 이들을 구제할 방법은 새로운 법률제정을 통한 방법 밖에는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차라리 신고를 철회한 다음, 이후 상황이 유리하게 조성되면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여 다시 심사를 받는 편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구제’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방법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대상 유족 대부분은 4·3위원회 민간인 위원들의 권고대로 신고를 철회했다. 신고중복 등의 사유로 신고가 철회된 대상자는 모

7)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p. 150.

8) 『제민일보』 2002년 3월 18일.

9) 고성만, 앞의 논문, p. 165에서 재인용.

두 778명이었는데,¹⁰⁾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이들 중 많은 수가 무장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신고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제주4·3사건의 희생자들의 범주가 결정되었다. 우선, 무장대 및 토벌대에 의해 죽임을 당한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여기서 물론 가해자는 무장대 및 토벌대 양자 모두이다. 다음으로, 무장대의 공격으로 사망한 토벌대 '국가유공자'들이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토벌대에 의해 죽임을 당한 무장대 관련자들은 희생자에서 배제되었다. 그들 역시 즉결처분 등 '국가폭력'의 '희생자'였음에도 그렇게 되었다. 무장대 희생자의 위패가 위패봉안소에서 제거되었던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였다.¹¹⁾

무장대 희생자들의 위패가 제거되면서, 위패봉안소에 모셔진 위패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수용할 수 있는 '국민'의 경계를 상징하게 되었다. 이들 위패 사이의 차이는 없다. 과거 국가유공자로서 특권적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이나, 그들에 의해 죽었을지도 모르는 민간인 피해자들이나 모두 동일한 희생자로서 같은 크기의 위패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뿐이다. 즉, 이 공간에서는 전체 희생자의 78.1%에 대해 책임이 있는¹²⁾ 토벌대의 책임여부가 전혀 부각되지 않는다.

한편, 무장대의 '책임'은 위패의 부재에 의해 오히려 도드라져 보인다. 무장대 출신의 위패가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은 이름이 각인되지 않은 위패가 '빈 칸'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14,000여개나 되는 위패 중 일부를 제거하면 나머지 위패 전체를 옮겨야하는 대규모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래 무장대 출신 희생자의 위패를 제거하고 나머지 위패를 옮기는 대신 원래 무장대 출신 희생자의 위패가 있는 곳에 빈 위패를 채워넣었던 것이다. 이것은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압도적으로 많은, 이름이 각명된 위패와 그렇지 않은 위패의 차이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사정을 자세히 모르면, 그냥 단순히 비어있는 위패일 뿐이지만, 그것에 의혹을 갖는 순간 그 빈 위패는 무장대 희생자들의 부재를 강하게 암시한다.

3. 부재하는 피해자들의 '관계성' 및 '집합성'

10)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p. 178.

11) 제주4·3사건 당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에 대해서 희생자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도 무장대 출신의 배제라는 원칙에서 논란이 되었다. 한편, 제주4·3사건 진압작전에 참가했다가 전사한 군인과 경찰을 4·3사건 희생자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논란이 되었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책, p. 169-173). 결국 이들은 희생자로 인정받았다.

12) 『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전체 희생자 중 78.1%가 토벌대에 의한 희생자였음을 밝히고 있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진상조사보고서』, p. 537).

4·3평화공원 곳곳에는 여러 범주 피해자들의 이름이 개별적으로 각명된 곳이 존재한다. 위패봉안소의 위패처럼 이 이름들은 피해자의 고유성을 드러내기 위해 도입된 것들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개별 이름들은 그 수에서 압도해서 오히려 피해자들의 고유성을 인지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피해자들의 고유성은 인격적 개성을 분명 포함하지만,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고유성은 그들의 개성을 구성하는 핵심일 수 있다. 그렇기에 그들의 고유성을 드러내려면 그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특성을 함께 드러내야만 한다. 그런데, 제주4·3평화공원 내의 개별 이름들은 이러한 관계를 떠올릴 수 없게 한다.

물론, 이 이름들은 국가의 행정체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주소체계’에 따라 분류되어 존재하고 있어 최소한의 관계는 전제되어 있다. 게다가 위패의 배치나 각명이 제주도 내의 본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그 나름대로 제주도 내의 지역성을 염두에 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지역성은 공동체와 이어지지 않는다.

위패봉안소의 위패 배열 원칙과 각명비의 성명 각명 원칙은 동일하다. 본적에 의해 지역별로 구분하는 방식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여성이 결혼해도 남편의 성이 아니라 결혼전의 성을 유지하는 한국적인 관습 때문에, 가나다 순으로 각명할 경우,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각명되지 못하고 멀리 떨어질 경우가 매우 많다. 가령, 오키나와평화기념공원에서 희생자들의 이름은 가족 혹은 친족들과 함께 있게 되지만, 그래서 가족 혹은 친족공동체 전체가 입은 피해를 각명비 자체에서 상상할 수 있지만, 제주에서는 그러기가 매우 힘들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가 피해자로서 위패봉안소에 봉안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는 각각 성(姓)이 다를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그들은 위패봉안소에서 가까이 있지 못한다. 한 가족이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표시는 전혀 없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배치는 그들이 가족임을 ‘아는 사람만’ 알아 보는 방식인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구체적인 대안의 부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택한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누구를 기준으로 가족 혹은 친족체계를 구성하느냐, 혹은 몇 촌까지 묶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논란이 매우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엄격한 원칙의 적용 대신 ‘상호인정’ 혹은 ‘대략적 인정’이라는 느슨한 원칙을 적용하면, 오히려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의 고유성이 부각될 수 있다. 이것은 ‘아는 사람만 아는’ 방식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도 알게 하는’ 방식

이며, 따라서 피해자들을 더 큰 공동체와 연결시키는 방식이기도 하다. 피해자들의 이름을 복원해 낸 저력이라면 이들의 '관계'도 복원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복원되는 동안 다시 한 번 개인의 개별적 고유성이 다시금 기억될 수도 있을 것이다.

피해자들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그들 죽음의 '집합성'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이것은 그들 죽음의 역사적 의미를 탐색하는 작업과 관련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4·3특별법>에서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 정의에서 수식어를 모두 제외하면, “제주4·3사건은 ...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 된다. 이 정의는 한편으로 주민들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주민희생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평가를 생략하고 있다.

‘죽은 자’들은 죽음에 의해 서로 질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 물론 이 관계는 그들의 의지에 의해 형성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관계라고 부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이 죽음으로서 맺은 이 관계는 그 자체로 고유하다. 피해자 개인의 고유성을 기억하는 것이 피해자를 기억하는 것의 핵심적인 원칙이라면, 죽음으로써 생겨난 이 ‘집합적 고유성’에 대해 인식하지 않거나 그것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를 기억하는 핵심적인 지점을 놓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들의 죽음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과 죽은 자들을 만나게 하는 데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살아남은 자’들이 보낸 편지를 읽고 피해자의 고유성을 인식하게 될 수도 있지만, 집합적 고유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해 개인의 고유성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죽음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은 한 번에 그치지 않는 것이다. 여러 이름들이 ‘정명(定名)’으로서 제시되고 그 중 하나가 채택되었다가 다시 기각되는 과정들이 반복될 것이다. 어쩌면 이 과정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화되어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4·3사건 해결 과정의 첫 번째 단계, 즉 ‘주민희생’을 인정받는 과정보다 더 지난할 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4·3에 ‘정명’이 부여된 적은 없다. ‘백비’는 여전히 비어있고, 세워지지 못했다. 그래서 한 번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세우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게 세워진 백비는 ‘기억의 공동체’에서 다시 무너지고 글자가 지워지는 과정을 끊임없이 되풀이해야 한다. 이 과정의 반복이 없다면, 즉, 단 하나의 ‘집합적 고유성’이 오랜 기간 지배하게 된다면, 죽은 자 하나하나의 고유성은 어쩌면 잊혀질지도 모른다. 개별적 고유성을 자원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집합적 고유성을 구성해내는 이 과정이야말로 어쩌면 희생자를 개별적으로 ‘기억’하는 일의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4. 피해자를 기억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기억주체와 ‘연루’의 문제

그런데, 죽은 자들을 고유한 개인으로 기억할 책임을 궁극적으로 져야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혹은 ‘우리’는 그들과 직접적인 인연이 없는데도 왜 죽은 자들을 기억하는가? 혹은 기억해야 하는가? 직접적인 인연이 없는데도 ‘죽은 자’를 기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태도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고통에 대한 공감’이다. 압도적이고 부조리하게 행사된 폭력에 대해 분노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에 함께 하고자 하는 이 ‘인간적’인 태도는, 피해자의 고유성이 전해지고 기억되기 위한 의문의 여지 없는 바탕이다.

다른 하나는 역사와의 ‘연루(implication)’를 통해 스스로의 책임에 대해 성찰하는 태도이다. 역사와의 ‘연루’라는 개념은 테사 모리스-스즈키가 제시한 개념이다. 그녀는 과거에 발생한 폭력에 대해 현재의 개인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역사적 과정과 맺는 ‘연루’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가폭력을 직접 휘두르거나 강압행위를 지시한 사람은 물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적·윤리적 의미에서 그 행위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가령, 1945년 이후 태어난 독일인의 경우 홀로코스트에 직접 가담한 사람들과 똑같이 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도 왜 1945년 이후 태어난 독일인들은 여기에 책임을 느껴야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그녀는 과거와의 ‘연루’의 문제를 제기한다.

... 우리는 이보다 더욱 넓은 의미에서 과거와 ‘연루’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폭 뒤집어쓰고 있는 구조나 제도, 개념의 그물은 과거의 상상력과 용기, 관용, 탐욕, 잔학행위에 의해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구조나 개념이 어떻게 성립되어 존재하는지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우리의 삶은 과거의 폭력행위를 통해 구축된 억압적인 제도에

의해 형성되어 왔으며, 이를 변혁시키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과거의 침략행위를 뒷받침했던 편견은 현재에도 계속 남아 있으며,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한, 현 세대의 마음속에도 그것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침략행위를 일으켰다는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책임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행위 덕분에 현재의 우리가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연루' 자체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¹³⁾

요컨대, '나는 그 학살에 참가하지 않았다. 내 선조도 그 학살에 참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그 역사적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다'는 인식이 바로 역사와의 '연루'이며, 이것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한 '관계', 즉 과거와 나의 관계다. 좁은 의미에서의 '책임'이 직접적인 가해자에게 물어지는 것이라면, '연루'를 통해서 오히려 그 책임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¹⁴⁾

고통에 대한 공감과 폭력적 역사와 연루되어 있다는 책임감을 함께 가진 자들 모두가 희생자의 고유성을 기억하려는 '기억공동체'를 구성한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공감하고 책임감을 가짐으로써 우리사회의 혹은 우리역사의 치유력을 일정하게 회복하는 데 일조했다. 이 '기억공동체'는 희생자들의 고유성을 기억하고자 했던 자기스스로를 기억하는 공동체이기도 하다. 여기서 피해자를 기억하는 것은 결국 공감하고 책임을 느끼는 '우리'를 기억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 우리가 기억의 힘을 믿는다면, 그 힘 속에는 스스로를 기억하는 힘의 강력함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다시 백비로 돌아가보자. 확실히 백비의 '여백'은 '제주 4.3의 역사적 의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타협물일지도 모른다. 누워있는 백비가 어떤 이에게는 좌절과 안타까움, 통한의 감정을 자아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혹은 우리는 기억한다. 4.3기념관 입구의 그 어두운 동굴을 지나, 처음으로 백비를 만났을 때의 전율을. "언젠가 이 비에 제주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 이것이야말로 4.3운동을 이끌어 온 모든 것이 아닌가! 그것이 만들어진 과정과는 별개로, 백비에는 4.3 전체를 하나의 운동으로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54년에 끝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70년 동안 계속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국가폭력과 그에 대한 저항의 운동. 그러므로 백비

13) 테사 모리스-스즈키, 김경원 역, 2006, 『우리 안의 과거: 미디어, 메모리, 히스토리』, 휴머니스트, pp. 45-46.

14) 심아정, 2018, 「'권력 없는 정의'를 실현하는 장소로서의 '인민법정':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30권, pp. 304-305.

는 그 자체로 4.3운동의 현실과 한계를 초과해버린 어떤 것,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과 항쟁에 대한 ‘우리’들의 ‘선언’이며, 피해자를 기억하는 우리자신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물이기도 하다. 이 ‘기억공동체’는 확대되어야 한다.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4·3 7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제주 4·3,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제1부

〈발표 2〉

집단묘지의 공간에 투영된 1980년 5월의 상흔

정호기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4·3 70주년 기념
-제주 4·3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집단묘지의 공간에 투영된
1980년 5월의 상흔

2018. 11. 15.(목)

정 호 기(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목 차

1. 5·18민주화운동이란?

2. '5·18' 관련 주요 지표와 현황

- 2-1. 피해자 규모
- 2-2. 관련 법률
- 2-3. 가해자 처벌
- 2-4. 관련 기관
- 2-5. 관련 시설

3. 광주시립공원묘지 제3묘역(망월묘역)

- 3-1. '5·18'과 제3묘역
- 3-2. '5·18'과 민주화운동 희생자
- 3-3. 발굴유품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보존실
- 3-4. 민족민주열사묘역(5·18 구 묘지)

4. 국립5·18민주묘지

- 4-1. 민주묘지의 조성 과정
- 4-2. 관련단체가 5·18민주묘지 조성부지로 요구한 터
- 4-3. 민주묘지 조성 일지
- 4-4. 민주묘지의 규모와 구성 요소
- 4-5. 제1묘지 묘역 구성과 안장 현황
- 4-6. 민주묘지의 추가시설과 공간의 변화
- 4-7. 민주묘지 공식 안내문의 변화
- 4-8. 민주묘지의 표상 담론과 다의성

5. 망월묘역과 민주묘지의 장소성

- 5-1. 경관과 상징
- 5-2. 기념의례(기념식)
- 5-3. 5·18 구 묘지와 민족민주열사묘역: 의례
- 5-4. 장소성

6. 마치며

1

5·18민주화운동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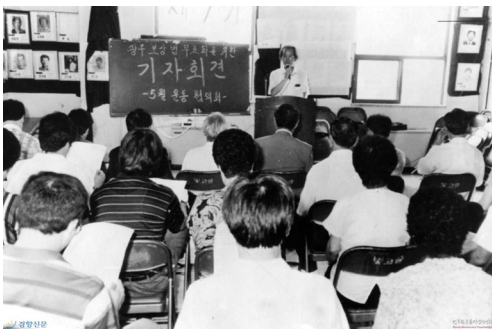
□ ‘5·18민주화운동’의 법률적 정의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불명확
 - “이 법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990. 8. 6. 제정)
- 보상법 제정 이전 정부의 공식 입장
 - ‘광주 학생과 시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1988. 4. 1. 정부 대변인 정한모 문화공보부 장관 발표)
 - 광주민주화운동 : 노태우 대통령 담화문(1988. 11. 26. 시국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5·18민주화운동의 다양한 별칭과 개념

- 5·18민주화운동의 정치·사회적 위상과 시선, 사회관계를 반영
- 5·18민주화운동, 5·18민중항쟁, 5·18광주민중항쟁, 광주항쟁 등으로 명명

2-1 ‘5·18’ 관련 주요 지표와 현황 : 피해자 규모



1990. 7. 20. 광주보상법 무효화 기자회견(「경향」)

□ 민주유공자 : 총 4,634명

□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 사망자 155명, 행방불명 81명 : 민간에서 오랫동안 주장되었던 사망자 규모와 큰 차이

□ 상이후사망자 : 11명

□ 상이 및 연행, 구금자 등 : 4,288명

(2015. 6. 현재, 광주시청 자료)

※ 계엄군 사망자 : 총 23명(군 교전 15명 / 시민과 충돌 8명)

2-2 '5·18' 관련 주요 지표와 현황 : 관련 법률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 8. 6.)
 - 제정 당시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3당 합당 이후 민주자유당 단독으로 제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1995. 12. 21. 제5029호)
 - **현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1995. 12. 21. 제5028호)
 - 3당 합의 : 찬성 225표, 반대 20표, 기권 2표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2. 1. 26.)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5. 7. 29.)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각종 조례

2-3 '5·18' 관련 주요 지표와 현황 : 가해자 처벌



1995.12.20일 수요일

「5·18특별법」 통과

국회 표결 「全·盧씨 재임」時效정지

5.18 12.12 판문점 합의

5.18 12.12 판문점 합의

5.18 12.12 판문점 합의

- 1997. 4. 17. 대법원 선고 (96도 3376호)
 - 무기징역 : 전두환
 - 징역 17년 : 노태우
 - 징역 8년 : 황영시, 허화평, 이학봉
 - 징역 7년 : 정호용, 이희성, 주영복, 허삼수
 - 징역 5년 : 차규현
 - 징역 3년 6월 : 장세동, 신윤희, 박종규
 - 무죄 : 박준병(당시 제20사단장)
- ※ 1997. 12. 22. 특별사면 전·노 석방

2-3 ‘5·18’ 관련 주요 지표와 현황 : 가해자 처벌

피고인명 확정 현황								
12.12 및 5.18사건								
								
피고인 황영식	정호웅	이회성	주영복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차규현	최세창
직책 1군단장	50사단장	계엄시령관	국방장관	보안서비스실장	보안사인사처장	합수부수사국장	수도군단장	3공수여단장
죄명 내란목적살인등	내란목적살인 등	내란목적살인 등	내란목적살인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형량 8년	7년	7년	7년	8년	6년	8년	3년6월	5년
비자금사건								
								
장세동	박준병	김우중	최원석	정대수	이현우	금진호	이원조	안현태
수경시30경비단장	20사단장	대우그룹회장	동아그룹회장	한보그룹회장	대통령경호실장	전 국회의원	국회의원	대통령경호실장
반란중요임무종사	반란중요임무종사	뇌물공여	뇌물공여	업무방해 등	뇌물수수	뇌물수수방조	뇌물수수방조	뇌물수수 등
8년6월	무죄	징역2년 집유3년	징역2년6월 집유4년	무죄	징역4년 추징6억	징역2년6월 집유4년	징역2년 6월	징역2년6월 추징5천만

「경향신문」, 2007. 4. 18.

2-4 ‘5·18’ 관련 주요 지표와 현황 : 관련 기관

- 중앙부처
 - 국가보훈처
 - －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 행정안전부
 - 문화관광부
-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 광주광역시
 - － 인권평화담당관실
 - － 5·18기념공원관리소
 -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 전라남도 : 행정자치과
-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간기관
 - (재)5·18기념재단
 - 5·18 관련 유공자 3단체 등
 - 5·18 관련 제 기관 및 단체
- 연구기관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등

2-5 '5.18' 관련 주요 지표와 현황 : 관련 시설 1



2-5 '5.18' 관련 주요 지표와 현황 : 관련 시설 2



3-1 광주시립공원묘지 제3묘역(망월묘역) : '5·18'과 제3묘역



1980. 5. 전남도청 앞 상무관 시신 안치(나경택)



1980. 5. 29. 제3묘역 안장(나경택)

3-1 광주시립공원묘지 제3묘역(망월묘역) : '5·18'과 제3묘역



1980. 5. 29. 제3묘역 안장(나경택)

□ 1980. 5. 29.부터 민간인 희생자 시신 일괄 안장

- 126(혹은 129)명이 안장됨
 - 안장 이후 '진혼제' 개최
 - 유족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함

□ 제3묘역(망월묘역) 해체작업 (1983. ~1984.)

- 「전남지역개발협의회」 주관
 - 보안부대 기획 및 지휘, 지원
 - 총 26기 이장. 일부는 복원

3-2 광주시립공원묘지 제3묘역(망월묘역) : '5.18'과 민주화운동 희생자



1987. 7. 9. 고 이한열 장례식(금남로)

□ 고 이한열 망월묘역 안장(1987. 7. 9.)

- 이를 계기로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이 망월묘역에 연이어 안장됨
-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은 '5.18' 관련 희생자들이 이장한 터에 또는 묘역을 확장하여 안장되었음

□ 1997. 신묘지 개장과 '5.18'희생자 이장

- '5.18민주묘지' 완공 후 이른바 '무명열사'들을 제외한 123기를 이장

3-3 광주시립공원묘지 제3묘역(망월묘역) 발굴유품 보존 : 기록관 보존실



2018. 10. 23.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보존실



2018. 10. 23.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보존실

3-4 광주시립공원묘지 제3묘역(망월묘역) : 민족민주열사묘역



2015. 5. 14. 민족민주열사유영봉안소
개소

□ 2002. ‘무명열사’ 11기 민주묘지 이장

- DNA 감식으로 6명의 신원 규명

□ 이천 민주공원 개원(2016. 6. 9.)과 이장

-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으로 5기 이장
 - 강경대, 이정순, 이내창, 홍기일, 최 동

□ 5·18 구 묘지 혹은 민족민주열사묘역

- 민족민주열사 43명이 안장되어 있음(2018.)
 - 2015. 5. 14. (5·18 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개소
 - 유영봉안소에 48위의 영정 봉안

4-1 국립5·18민주묘지 : 민주묘지의 조성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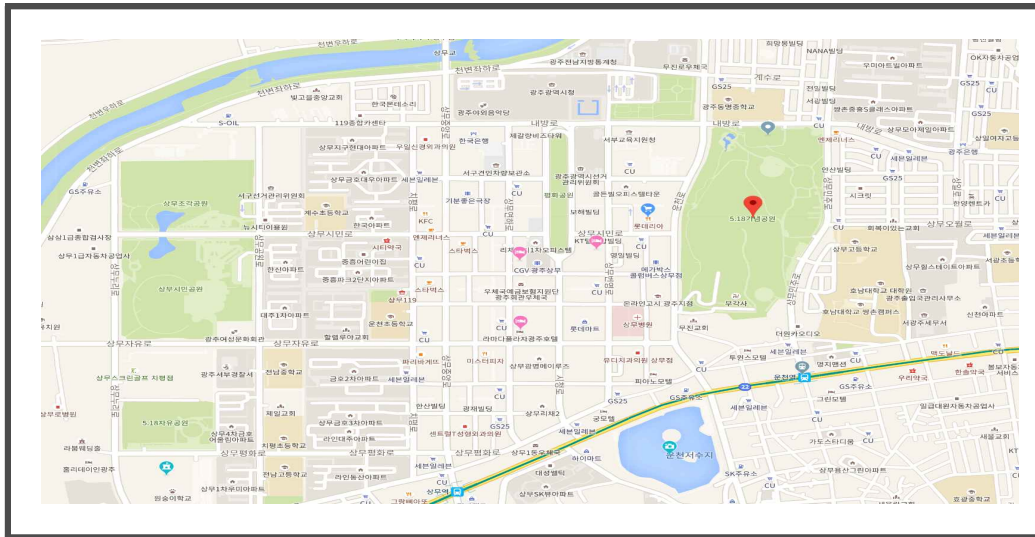
□ 노태우 정부

- 1988. 4. 1. 정부 대변인이 발표한 “광주사태 치유방안”에 “망월동묘지의 공원화와 위령탑 등이 건립될 경우 정부 지원”이라는 항목이 포함됨
- 1990. 7. 3. 노태우 대통령이 ‘민주자유당’ 중앙 당사를 방문하여 “상무대의 일부 공원화와 기념탑 건립”을 야당과 잘 의논하여 처리하라고 지시

□ 김영삼 정부

- 1993. 5. 13.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담화에서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념사업을 공표
 - “망월동 묘역은 민주성지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묘역 확장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함으로써 실질적인 첫 걸음을 내딛게 됨

4-2 관련단체가 5·18민주묘지 조성부지로 요구한 터



4-3 국립5·18민주묘지 : 민주묘지의 조성 일지

□ 민주묘지 조성 주요 주체와 협의

- 1993. 5. 17. 기획단 구성
- 1993. 8. 27. 「범시민기념사업 추진협의회」(5추협) 구성
- 1993. 11. 26. 신묘지 장소 결정
- 1994. 1. 12. 「오월성역화를 위한 시민연대모임」 결정
- 1994. 10. 29. 광주시와 유족이 7개항의 쟁점에 대해 요구 및 협의
- 1994. 11. 4. 유족 추가 건의

□ 국립5·18민주묘지 공사 일지

- 1993. 8.~1994. 9. 진입로 확장 공사
- 1993. 11. 27. 아이디어 현상공모
- 1994. 1. 9. 기본계획 현상공모
- 1994. 7. 23.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1994. 11. 1. 기공식
- 1994. 11. 18. 도시기본계획 승인
- 1995. 7. 7. 상징조형물 현상공모
- 1997. 5. 17. 완공식

4-4 국립5·18민주묘지 : 민주묘지의 규모와 구성 요소

□ 민주묘지의 규모와 사업비

- 광주시 북구 운정동 산34번지 일원
- 면적 : 167,770㎡(약 50,840평)
-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 기본설치설계 : (주)한림조경기술사무소
- 시공 : 남해종합개발
- 완공까지의 사업비 : 261억 원(국비 223, 시비 38)

□ 민주묘지의 주요 구성 요소

- 진입광장 : 7,000평
- 민주광장 : 3,000평 - 민주역의 문
- 참배광장 : 3,800평 - 추념문
- 추모탑, 부조, 군상환조, 참배단, 유영봉안소
- 묘역 : 3,000평
- 총 10개 묘역에 784(현 782)기
- 전시공간 : 800평 - 역사의 문 지하
- 역사공간 : 5,500평
- 7개 마당 부조 조형물
- 녹지공간 : 27,180평

4-4 국립5·18민주묘지 : 민주묘지의 규모와 구성 요소



4-5 국립5·18민주묘지 : 제1묘지 묘역 구성과 안장 현황

■ 구성현황

구분	합계	1묘역	2묘역	3묘역	4묘역	5묘역	6묘역	7묘역	8묘역	9묘역	10묘역
안장능력	782	100	100	99	97	89	88	45	47	48	63
안장기수	775	100	98	97	97	88	88	45	47	48	67
잔여기수	7	0	2	2	0	1	0	0	0	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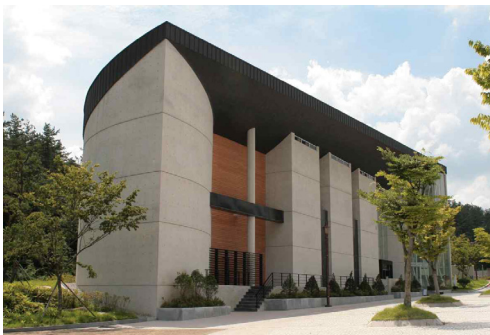
■ 묘역배치도

개인별 묘역 확인은 안장자 찾기를 통해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8. 7. 16. 현재

4-6 국립5·18민주묘지 : 추가시설과 공간의 변화



2007. 5. 14. 5·18추모관 개관
(추모공간, 기록공간, 상징공간, 교육공간)



2014. 6. 국립5·18민주묘지 휴게시설 건립
(1층 사무소, 휴게시설, 2층 교육장, 지하 식당과
문서보관소 : 총 건립비 16억)

4-6 국립5·18민주묘지 : 추가시설과 공간의 변화



2018. 5. 18. 제2묘지 참배객



2018. 제2묘역(자유묘역) 안장 개시
(현수기념비 일대, 약 15,000㎡)

4-7 국립5·18민주묘지 공식 안내문의 변화

확인 시기	2005년 11월	2010년 5월
안내문	여기 국립5·18묘지는 1980년 광주민주민중항쟁 당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산화하신 분들과 부상 등 희생되신 분들이 함께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1994년부터 시작한 5·18묘지 성역화사업이 3년만에 완공되어, 손수레나 청소차에 실려와 저 뒤쪽 산기슭(시립묘지3묘역, 5·18구묘지)에 묻혀 저 세상에서도 눈을 감지 못하던 분들부터 여기에 안장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설치·운영하여 온 5·18묘지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2. 7. 27 국립묘지로 승격됨에 따라 국가에서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때 함께 싸웠던 분들이 계속 묻혀 그 분들의 거룩한 정신이 여기 우뚝 선 탑 위에 장엄한 불꽃으로 솟아 우리 민족과 세계인의 가슴 속에 널리 번져 나갈 것입니다. 2002년 7월 27일 국가보훈처장	여기 국립5·18민주묘지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과 당시 부상을 당하였거나 구금되어 고문과 옥고를 치른 후 사망하신 분들이 안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1994년부터 시작한 5·18묘지 성역화사업이 3년만에 완공되어(1994~1997), 손수레나 청소차에 실려와 5·18구묘지(광주시립묘지 3묘역)에 묻혀야 했던 분들을 이 곳에 모셔와 안장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설치·운영하여 온 5·18묘지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2. 7. 27 '국립묘지'로 승격됨에 따라 국가에서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곳 국립5·18민주묘지는 다시는 불의와 독제가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 되어 우리민족과 세계인의 가슴속에 영원한 민주성지로 기억될 것입니다.

정호기(2010), 「과거사 교육의 중요성 인식과 제도의 형성 그리고 기념공간」, 『시민사회와 NGO』8-2호, 97쪽.

4-8 독립5·18민주묘지의 표상 담론과 다의성

□ 다양하게 기록된 용어

- 독립5·18민주묘지의 시설들에 5·18 민주화운동(공식 안내판, 참배단의 참요령 안내문)과 5·18민중항쟁(민주의 문 내부 전시물, 추모탑, 행방 불명자 묘역) 등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묘지를 둘러싼 기억투쟁의 흔적이며, 이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음

□ 전시의 방법과 내용의 변화

- 사건과 진상의 알림과 전달에 역점을 두었던 지난 전시실과 달리, 2007년에 건립된 추모관의 전시는 다양한 문화·예술적 재현에 역점을 두었고, 사건의 내용은 추상화되었음. 그리고 5·18을 구성하는 주요 사건과 장소 등은 모형과 다양한 기법들로 재현됨. 반면 기존 전시실에서 강력하고 충격적인 인상을 주었던 사진들은 전시대상에서 배제됨

5-1 5·18 구 묘지와 독립5·18민주묘지 : 경관과 상징



5·18 구 묘지(민족민주열사묘역)



독립5·18민주묘지

5-2 5.18 구 묘지와 국립5.18민주묘지 : 기념의례(기념식)



1984. 5. 18. 망월묘역에서 추모제를 지내고
광주 도심으로 진출(「경향신문」)



2017. 5. 18. 국립5.18민주묘지 기념식

5-2 5.18 구 묘지와 국립5.18민주묘지 : 기념의례(기념식)



2018. 5. 18. 이낙연 국무총리 참배(「광주인」)



2018. 5. 18. 국립5.18민주묘지 기념식 후

5-3

5.18 구 묘지와 민족민주열사묘역 : 의례



민족민주열사묘역(안내도: 2018. 10. 13)



민족민주열사묘역(2018. 10. 13. 현재)

5-3

5.18 구 묘지와 민족민주열사묘역 : 의례



2018. 10. 13.
호남민족민주열사(의생자) 합동추모제



2018. 10. 13.
호남민족민주열사(의생자) 합동추모제

5-3

5.18 구 묘지와 민족민주열사묘역 : 의례



2018. 10. 13.
호남민족민주열사희생자합동추모제



2018. 10. 13.
호남민족민주열사희생자합동추모제

5-4

5.18 구 묘지와 국립5.18민주묘지 : 장소성



2007. 5. 13.(광주)



2007. 5. 17.(전남)



2018. 5. 14. 국방부장관 참배 무산(무등)



2018. 5. 18. 5.18 구 묘지 참배(「연합뉴스」)



2018. 5. 18. 국립5.18민주묘지 기념식(「연합뉴스」)

6

마치며



1985. 5. 18. 추모제(「경향신문」)

- 1980년 5월의 사건이 오늘날에도 뜨거운 정치·사회적 의제인 이유가 무엇인가?
- 1980년 5월을 기념, 기억하는 내용과 방식이 왜, 어떻게 다른가?
- 5·18 구 묘지와 국립5·18민주묘지의 주요 참배자와 활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 2018년 현재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주요 쟁점들은 무엇이고, 적절하고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까?

참고문헌

- 정근식. 2000. <민주열사, “광주”, 망월동>.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월례발표회.
- 정호기. 2000. 「5·18과 도시공간의 상징적 구성」. 『공간과 사회』 14호.
- 정호기. 2001. 「제26장 5·18기념행사와 기념사업」. 『5·18민주항쟁사』.
- 정근식. 2002. 「5월운동과 비엔날레」. 『기억, 장소, 축제』. (재)광주비엔날레, (재)5·18기념재단.
- 정호기. 2003. 「광주민중항쟁의 ‘트라우마티즘’과 기념공간」. 『경제와 사회』 58호.
- 5·18민주항쟁사적지답사기편찬위원회. 2007. 「죽음에서 부활로 가는 거룩한 땅」. 『그때 그 자리 그사람들』. 여유당.
- 정호기·이영미·오승용·김기곤. 2006. 《국립5·18민주묘지 장기발전 방안》. 국가보훈처.
- 정호기. 2007. 「저항의례의 국가화와 계승담론의 정치」. 『경제와 사회』 76호.
- (사)한국현대사학회연구소. 2007. 《국립5·18민주묘지 10년사》. 18민주묘지관리소.
- 정호기. 2009. 「제14장 ‘5·18’의 기억과 계승, 그리고 제도화」. 『5·18민주항쟁에 관한 새로운 성찰적 시선』. 한울.
- 정호기. 2010. 「‘5·18’의 주제와 성격에 관한 담론의 변화」. 『황해문화』 6월호.
- 정호기. 2010. 「‘5·18’의 기억 공간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noon』 2호.
- 정호기. 2010. 「과거사 교육의 중요성 인식과 제도의 형성 그리고 기념공간」. 『시민사회와 NGO』 8권 2호.
- 나간채. 2011. 「5·18기념사업과 5월운동」. 『민주주의와 인권』 11-2호.
- 정호기. 2012. 「시민사회의 사회운동 기념물 건립과 표상」. 『경제와 사회』 94호.
- 정호기. 2015. 「기념사업으로 본 ‘5·18’의 의미 변용」. 『한국언론정보학보』 71호.

[illegible]

4·3 7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제주 4·3,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제2부

2nd Session

4·3 7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제주 4·3,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제2부

〈발표 3〉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 제사의 전승과정 : 면접 조사 결과

김석윤

제주공공정책연구소 나눔 소장

1. 들어가며

제주43 70주년을 맞이하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신고가 진행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추모 사업이 펼쳐졌다. 또한 유족복지와 관련해서 생활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미흡하지만 다양한 지원 방안이 제도화되어 있다.

기억과 추모의 방식에 있어서는 ‘43희생자 추념일 지정’에 따른 국가 의례와 읍면단위 희생자를 추모하는 마을 의례, 주요 사건 단위로 진행되는 공동의례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는 급속한 개발과 사회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관련 묘의 이전이 발생하고 제사 등 추모방식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43희생자 개인의례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희생자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당시 사망자 가운데 유족이 없는 희생자가 3,537명에 이르고 있다(2018년도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정기총회 자료집: 58).

본 연구는 43직계부존 희생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43특별법 시행령 제8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와 10조에 의해 희생자로 확정된 자의 명부와 신고서를 분석하였다.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로 추출된 명부를 통해서 희생자와의 관계, 제사방식, 묘지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제사와 묘지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면접조사를 시행했다. 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43희생자와의 관계, 제사를 지내게 된 배경 및 향후 처리문제 등을 조사했다.

본 연구는 43희생자 가운데 직계가족이 없는 희생자 묘지의 관리 실태, 직계가 없이 사촌 등 방계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제사에 대해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43희생자 묘지 관리 및 추모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 개념

1) 43희생자와 43유족의 정의

43희생자와 43유족에 대한 정의는 법률로 정해진 유족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정관에 따른 유족이 있다. 법에 의해 인정된 유족은 복지 대상에 포함되지만 법의 테두리 밖에 존재하는 유족은 복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의 제2조(정의)에서 ‘희생자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자로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희생자의 유형은 ‘사망’, ‘후유장애’, ‘수형자’로 구분하고 있다. 43특별법상 유족은 4촌 이내에 제사를 지내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43특별법에서 유족 1순위는 직계비속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며, 2순위는 형제자매, 3순위는 4촌 이내에 제사를 지내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2순위와 3순위의 경우 1세대(희생자 기준)에 한해서만 유족으로 인정되고 있다. 때문에 조카 등 직계를 벗어난 분묘 관리 주체는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실제 백부 등의 제사를 모시는 가족은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희생자는 호적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집안 풍습에 의해 양자로 입적되더라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예외적으로 3순위 유족까지 없을 경우 제사나 분묘를 담당하는 조카도 유족으로 인정되는 추세이다.

반면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회원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5조 (회원 자격) 본회의 외원은 43특별법 제2조 및 제3조 제2항에 의거 유족으로 결정된 자로 한다. 일반회원은 43특별법에 의거 유족으로 인정받은 자, 정회원은 43특별법에 의거 유족으로 인정받고, 본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회원을 말한다. 준회원은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유족으로 결정 받지 못한 자 중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처럼 유족회는 43특별법에 따른 유족을 기본으로 하되, 정황상으로는 유족이지만 증빙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여 법에 의한 유족이 될 수 없는 경우도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 43위원회 심의·결정과정에서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는 희생자 78명, 유족 371명에 이르고 (2017.12.31.일 기준)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유족의 세대구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촌수와 상관없이 최초의 봉제사와 분묘관리 세대를 1세대로 정했으며, 2세대 유족은 1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족, 3세대 유족은 2세대로부터 분묘와 제사를 이어받은 세대로 정했다.

2)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무연고는 연고나 연고자가 없음으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무연고묘지는 연고나 연고자가 없는 묘지이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16항에서 연고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외의 직계비속²⁾, 부모외의 직계존속³⁾, 형제·자매 등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무연고는 위 정의에서 제외된 혈족(血族)을 말한다. 무연고 시신 처리 매뉴얼에 따른 무연고 시신이란 단순히 연고자가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이른다

3)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이른다.

학술적으로 무연이란 가족이나 친척은 물론이고 우인(友人) 등도 없이 병 등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⁴⁾ 한국에서 보통 무연고자라고 칭하는 이들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홀로 사는 사람(김혜화, 2015 :20)으로 볼 수 있다.

일제신고 및 조사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분묘는 연고자가 없는 분묘로 보며 시·도지사는 국토활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무연분묘의 유골을 공·사설 추모의 집에 집단 안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이고 안치기간이 경과한 유골에 대해서는 땅에 묻어 집단납골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허한양, 2007: xxxiv).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무연고라 함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친인척도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어도 연락이 안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4·3특별법에는 4·3무연고(직계부존)희생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의 4·3무연고(직계부존)란 엄밀하게는 직계 비속이 없는 4·3희생자를 말한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4·3희생자의 묘지 관리와 제사를 봉행하는 주체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4·3무연고(직계부존)라 함은 4·3희생자 가운데 직계 비속이 없으나 4·3특별법에 의한 4·3유족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자(친인척)들에 의해 제사 봉행과 묘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4·3희생자로 정의하고자 한다.

3. 면접조사 결과 및 분석

4·3희생자 유족 탐문을 통해 방계유족이 발견되면 면접조사를 시행했다. 면접조사는 1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질의 후 증언자의 자유발언을 기록, 재정리하는 수순으로 진행하였다. 면접조사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내용은 전화 면접을 통해 내용을 보완하였다.

1)희생자 제사 봉행 실태

직계 후손이 없는 희생자 제사를 지내는 유족 나이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70~80대 나이에 또 여전히 희생자의 제사를 모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애절함이 있으나 반대로 생각하면 전승시킬 주체가 마땅하지 않거나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도 볼 수도 있다.

4) 岡田知己, 「“無”にならず生きていけるような社会とは」, 『早稲田大学文化構想学部現代人間論系岡部ゼミ』, 2011, p.3; 김혜화(2015), 「한국의 無緣故 시신 처리 정책의 개선방안 연구-일본 無緣事會와 비교하여」, 8.

〈표 1〉 현재 제사를 봉행하는 주체의 나이

구분	인원(명)
40대	1
50대	6
60대	1
70대	4
80대 이상	4

아래의 〈표 2〉는 당시 희생자의 혼인 상태와 자녀 유무를 파악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23명 희생자 가운데 12명이 혼인관계에 놓여 있었다. 이 가운데는 배우자 사망 이후에도 혼인관계가 지속된 경우는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6명이다. 배우자 사망 후 재혼한 사례는 4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혼인관계에 놓여있던 12명을 대상으로 직계혈족 유무를 살펴봤을 때 자녀가 없는 경우(당시 자녀가 함께 사망함으로써 지금은 자녀가 없는 경우 포함)가 9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실제 23명 희생자 가운데 3명만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마저도 딸이기 때문에 출가 후 봉제사에서 멀어지고 있다.

〈표 2〉 희생자의 혼인여부

구 분		인 원(명)
혼인	유지(당시 사망 포함)	6
	이혼(사건 전)	1
	재혼	4
	망자혼	1
	합 계	12
자녀	없음	6
	당시 사망	3
	재혼남편 호적	1
	출 가	2
	합 계	12

제사승계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제사를 모시는 주체와 희생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3〉와 같다. 한 집안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경우 전부 집계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이다. 대부분 조카(3촌)에 의해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촌형제 및 5촌 조카가 모시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표 3〉 희생자와 현재 제사 봉행 주체의 관계

구 분	표본수(명)
조카(망자혼 1, 호적상 조카 1 포함)	18
사촌형제(제수포함)	8
5촌 조카	2
조카손	2
합계	30

양자⁵⁾에 의해 제사 및 분묘를 관리하는 형태도 나타나고 있었다. 조사대상 18샘플

가운데 양자에 의해 봉제사 되는 경우도 5건이 발견된다. 양자의 경우 호적에 입적된 사례는 없으며 문중에 의해 양자(미입적)로 정리된 사례이다⁶⁾.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에 따르면 호적부에 오르지 못하거나 호적 정정을 하지 못해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양자·양녀는 5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제주新보, 2018.05.01.)하고 있다.

2) 희생자 묘지관리 실태

희생자의 묘지는 소개 등의 사유로 인해 소개지 인근에 임시로 매장했다가 멸실되는 경우와 마을 안에서 사망했지만 출입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 인근 공유지에 매장하는 사례가 있었다.

조사대상 희생자 가운데 행방불명인 경우는 총 9명으로 파악된다. 이들에 대한 묘지는 행방불명으로 인해 묘지를 조성할 수 없었으나 일부에서는 이들을 위한 별도의 추모시설을 조성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추모시설 조성여부

행방불명	비석 등 기념물 조성	없음
9명	5개(1예정)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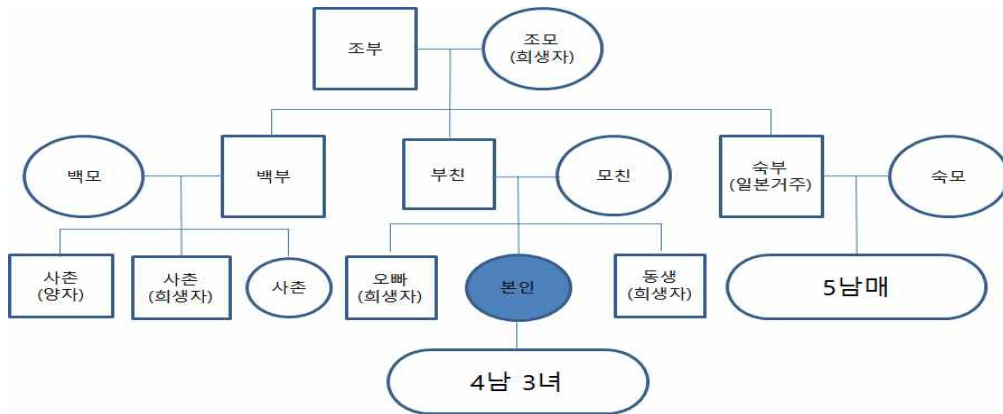
조사대상 가운데 원래부터 묘지를 조성한 사례는 총 9건이다. 이 가운데 지금도 개인묘지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는 4건으로 조사되고 있다. 나머지는 가족묘지로 옮겨졌다. 이전 가정도 관리의 어려움, 개발로 인한 이전, 가족묘지 조성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조성된 묘지의 관리는 가족묘지의 경우 집안(문중)에서 공동관리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개인묘지는 제사 주체와 묘지관리 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시 미성년 희생자들은 대부분 외딴곳에 묘지를 조성했다가 멸실된 이후 별도의 추모시설은 만들지 않고 있었다.

4. 가계도 분석

- 5) 제주도에서는 후손이 없이 죽은 귀신을 무적귀신(無籍鬼神)이라 해서 가장 불행한 존재로 여긴다. 자손이 없는 미혼의 사망자는 더욱 그러하다. 미혼으로 죽은 자녀의 제사는 :까마귀 모른 시께'라 해서 가족끼리 조용히 치른다. 제사를 맡아 지내던 부모가 사망하면 남자형제가 이어받아 지내주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사망하면 제사는 중단된다. 따라서 사후혼(事後婚)을 치룬 후 양자를 삼아 주어서 공식적이고 지속적으로 제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양자 역시 육지에서는 기혼자만이 들일 수 있는데 반해서 제주도에서는 사후혼을 통해 미혼 사망자라도 양자를 삼을 수 있다(최재석(1978b), 「제주도의 사후혼」 『한국학보』13., 일지사, 123; 이재은(2011), 「제주도의 조상제사와 기독교」, 17~18에서 재인용)
- 6) 민법은 친양자의 경우 양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한 연령을 미성년자로 제한하고 있어 19세 미만의 자가 양자가 될 수 있으나(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 일반적인 양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안문희, 2018 :4).

사례 : 생존 딸이 제사를 지내다가 양자에게 승계한 사례



제사승계>

딸은 사건발생 후 1년여 지나서 결혼했으며 결혼 후에도 모친과 오빠 그리고 남동생의 제사를 30년 정도 지냄. 이후 친정집안 논의 과정에서 대가 끊기니까 양자에게 이전하기로 협의하고 그 후 지금까지 양자(호적 미등재)가 제사를 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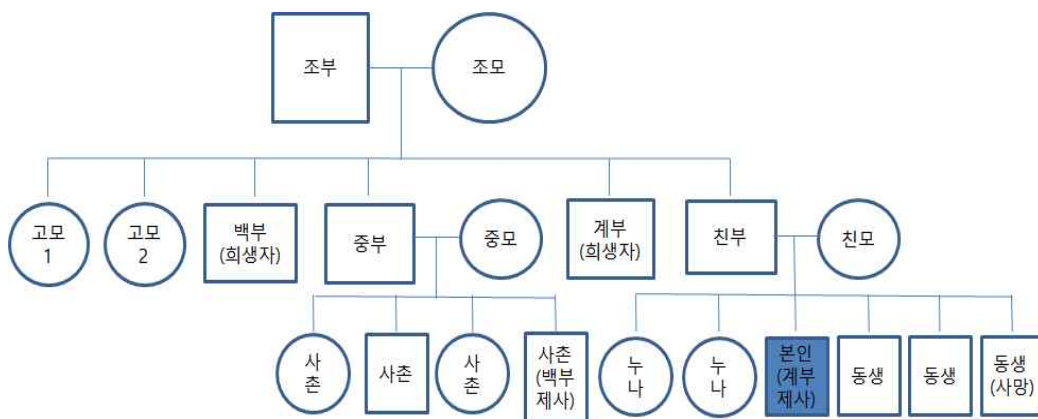
제사방식>

당초 어머니와 오빠 그리고 남동생은 합제를 했으나 부친이 사망하자 현재는 가족 4명을 합제 방식으로 봉행하고 있음. 양자에게 제사를 넘기면서 집안 재산(토지) 대부분을 양자 명의로 전환 함.

묘지>

가족묘지에 모친 무덤과 오빠와 남동생 비석이 세워져 있음.

사례 : 합제했던 제사를 사촌형제가 재분배하는 방식



제사승계>

부친이 살아계실 때 까지는 백부와 계부가 같은 날 사망했기 때문에 합제 형식으로 제사를 지냄. 부친 사망 후 본인이 사촌동생에게 함께 43유족으로 함께 아픔을 나누자고 제안하면서 제사를 나누게 됨. 본인이 사촌형이지만 집안 가계에 따르면 중부댁이 주손집안이 됨으로 사촌동생이 백부 제사를 모시고 있으며, 본인은 같은 날 계부 제사를 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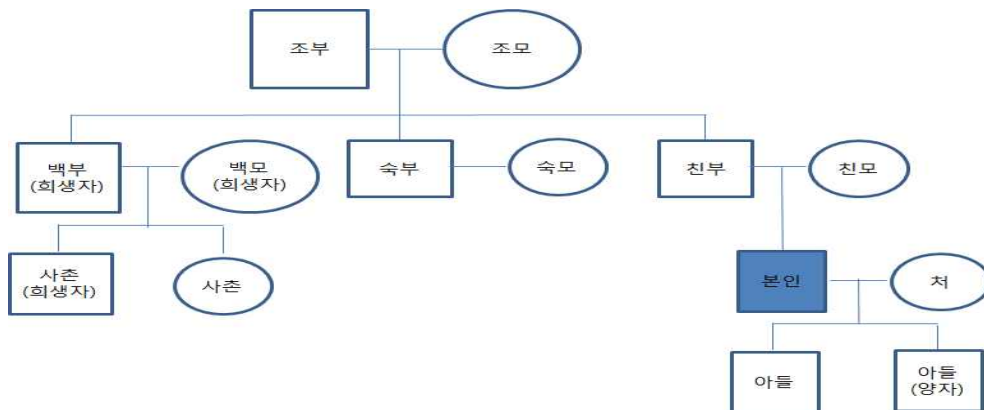
제사방식>

집안 풍속도 3대까지 제사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희생자 두 분도 3대까지는 해야 함. 백부와 계부 두 분 모두 함께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제를 해도 같이 해야함.

묘지>

가족묘지를 조성하고 11대 조부부터 부친까지 이장했으며 희생자 두 분도 화장하여 평장 형식으로 매장 함. 관리는 사촌들과 공동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방식을 유지할 계획임.

사례 : 3세대 양자 입적 사례



제사승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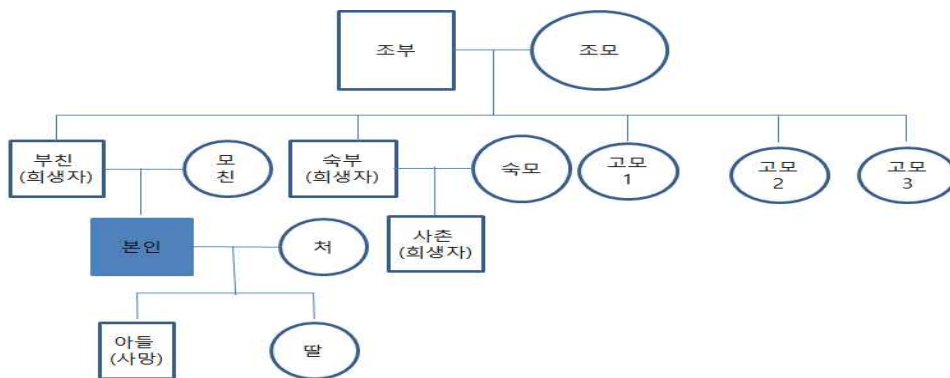
백부에게는 당시 아들(희생자)과 딸이 있었으나 딸은 출가했으므로 희생자의 막내동생(증언자의 부친)이 제사를 지냄. 부친 사망 후 아들(증언자)이 승계하고 있음. 본인 사후에는 증언자의 둘째아들(조카손)을 희생자 밑으로 양자를 보냈기 때문에 조카손이 제사를 승계할 예정임. 집안 풍속이 4대 봉사 후 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제사도 그렇게 할 예정임. 제사 방식은 유교식으로 백부와 백모 사촌형을 합제 지내고 있음. 친부(희생자의 동생)가 희생자 몫으로 땅을 분할하고 그 땅을 손자(양자)에게 이전하였음.

묘지>

백부는 가족공동묘지에 이장하여 매장하였으며 백모와 사촌형은 비석만 세움. 묘지는 가족공동묘지이기 때문에 친족이 함께 관리함.

사례 : 이혼한 숙모와 합제 사례

가계도 1

**제사승계>**

조부가 모시다가 돌아가신 후 본인이 지내고 있으며 본인까지는 제사를 지내겠지만 본인은 딸만 있고(아들은 질병으로 사망) 사촌도 없기 때문에 본인 사후에는 대가 끊길 것임으로 제사를 계속 지내는 것은 불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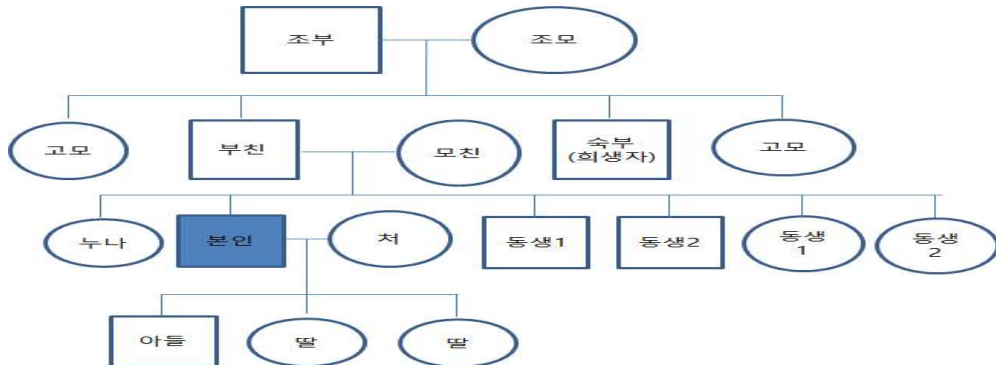
제사는 유교식으로 지내고 있으며 부친과 모친, 숙부와 숙모를 합제 형식으로 지내고 있음. 모친과 숙모는 재혼 했지만 자식까지 있었음으로 숙부와 합제하고 있음. 실질적으로는 재혼한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겠지만 이곳에서도 한 번 더 제사를 지내고 있음.

묘지>

당시 43성이 000까지 있었으며 집이 근처였기 때문에 부친과 숙부 두 분 모두 000에 매장 함. 부친은 사돈집 토지에 이장했으나 숙부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두 분다 이장할 수 없어 원래 그 자리에 그대로 존치함.⁷⁾숙부 묘지는 비석이 없고 본인 사후 연고 없는 묘지가 될 것으로 여겨짐. 집안에 본인뿐이므로 분묘 관리는 혼자 하고 있으며 현재 딸뿐이라서 본인 사후에는 무연고로 남겠지만 대책은 없음.

7) 자기 토지에 묘지를 만드는 것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편안하겠지만 풍수지리 등으로 좋은 자리를 찾아다니는 결과 남의 땅에 시신을 매장하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토지주의 양해를 구하고 일반 밭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고관용, 2014, 13~14). 이 사례는 돈을 주고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친만 이장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음.

가계도 2



제사승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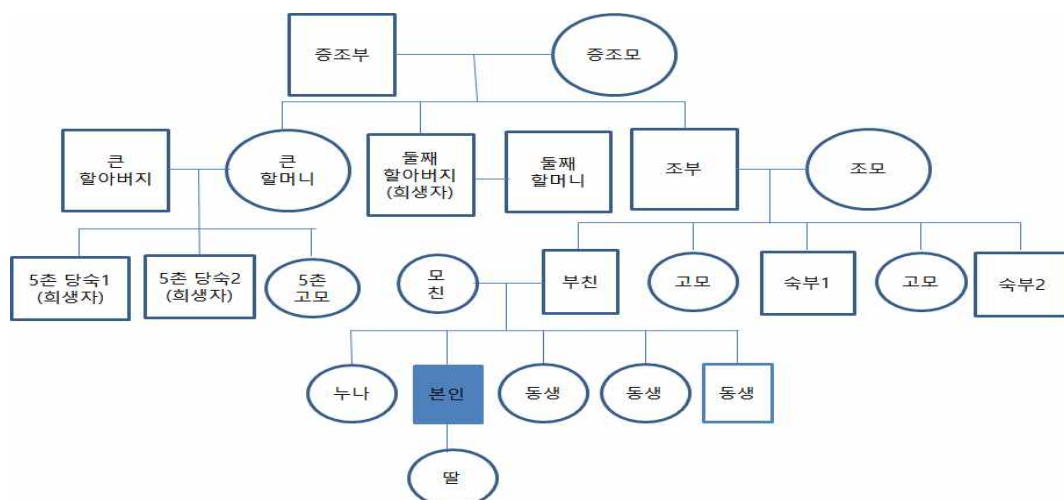
부친이 지내다가 부친 사망 후 부터 본인이 하고 있음. 12년 후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고 본인 생각은 제사 뒀으로 분재를 해서라도 아들까지는 계속 지낼 생각인데, 아들이 유족이 되면 모르겠지만 이어받을지는 모르겠음. 현재는 숙부 제사를 독립제로 지내고 있으며 재혼한 숙모가 살아계신데 돌아가시면 숙부와 합제할 생각을 갖고 있음.

묘지>

할아버지 산소 옆에 숙부 비석을 세웠다가 4.3평화공원에 행불인 표석이 만들어지면서 비석은 묻어버렸음. 지금은 가족묘지를 조성했는데 윗대부터 순서대로 비석을 세우는 중이어서 내년 부친 비석 세울 때 숙부도 세울 계획임.

사례 : 단절되는 사례 및 수평이동

가계도 1



제사승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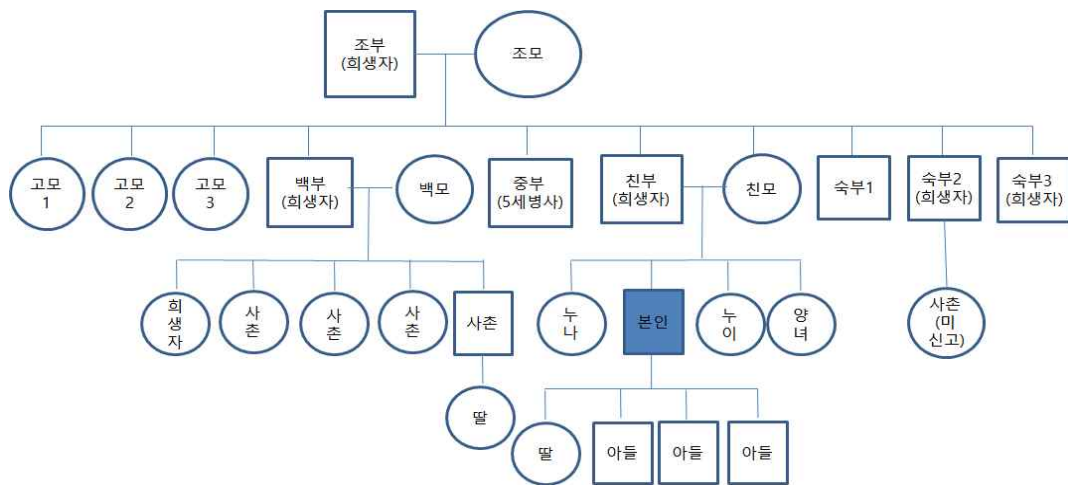
어머님이 나이가 들어 본인이 주관하기 시작했으며 큰할아버지 둘째할아버지 조부까지 전부 본인이 지내고 있음. 부친이 살아계실 때 제사를 동생들과 나누었으나 동생들(숙부1, 2)이 제사를 안모시니까 아버님이 계속 지내다가 본인에게 승계됨.

5촌 당숙 두 분과 형제간인 고모가 일본 거주하다가 사망했으며 자손은 없음. 당숙 제사는 본인 부친이 지내고 있었으나 5촌 고모가 생존해 있었음으로 부친도 유족이 될 수 없었음.

본인은 딸뿐이라서 동생 아들(조카) 쪽으로 물림할 계획이지만 계승이 안되면 집안에 담당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중으로 넘기는 것도 고민 중임.

묘지>

처음에는 개인묘지 형태로 있었으나 10년 전에 조상 묘 전부를 가족묘지로 이장했음. 친척이 합동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할 자손이 없어가니까 납골도 검토 중.

가계도 2**제사승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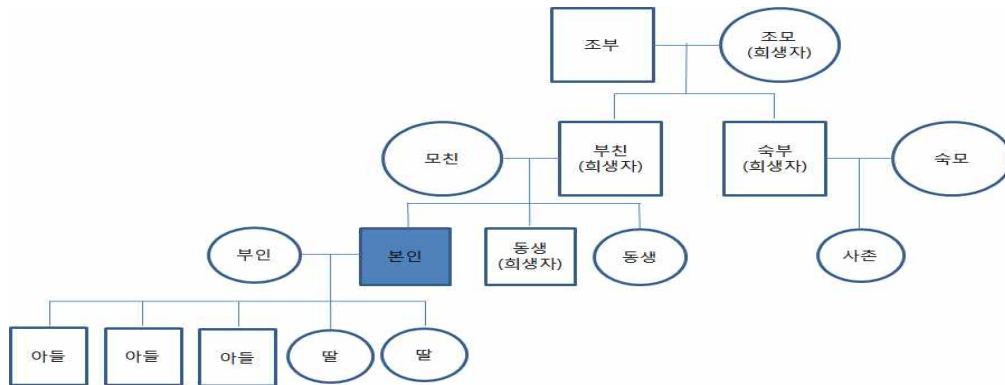
현재는 본인이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자식까지는 당연히 모셔야 하고 손주 때까지 권유할 예정이며, 향후 큰아들로 이어갈 생각임.

사촌은 현재 백부(본인 부친) 제사를 지내고 있으나 딸만 있음으로 조카(증언자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임.

묘지>

가족묘지를 조성했으며 숙부 3분과 할아버지 위령비 세움 사촌과 본인이 관리

사례 : 추모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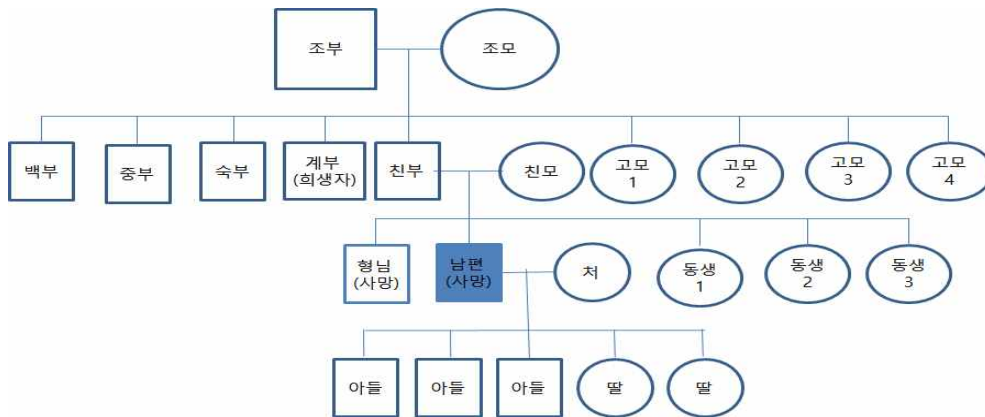
제사승계>

제사는 각자 독립제사형태로 지내고 있으며, 할아버지와 모친이 살아계실 때는 함께 제사를 지내다가 모친이 돌아가신 후 본인이 계속 지내고 있음. 제사 날짜는 부친과 숙부는 생일 기준으로 지내고 조모는 사망 날짜에 지내고 있음. 동생은 당시 오라초등학교 학생으로 10세 미만이기 때문에 당시 풍습에 따라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음. 아들 때 까지는 하겠지만 손주는 모르겠음.

묘지>

제주시 공동묘지 내에 부친과 숙부는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헛묘는 만들지 않고 꽃동산 형태로 조성. 동생(희생자)의 경우는 나이가 어려서 냇가에 매장했기 때문에 지금은 위치를 모르고 새로 조성된 공동묘지 내에 비석이나 꽃동산도 없음.

사례 : 수평 이동 후 조카며느리가 봉행



제사승계>

독립제 방식이며 초기에는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냈으나 남편 형님이 기독교 방식으로 바꾼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기독교 방식으로 지내고 있음. 현재는 남편이 사망했음으로 본인(부인)이 지내고 있음.

막내아들이 제사를 승계할 예정이며 이유는 자식들 중에서 도내에 거주하는 자식임과 동시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유일한 자식이기 때문임. 막내아들 이후는 그 때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음.

묘지>

당초 희생자 묘지는 00리에 매장했으나 관리에 어려움을 느껴 제주시 00으로 옮김, 지금은 하늘공원 내에 가족장을 40년 계약으로 구입했으며 그 곳으로 남편과 계부(희생자) 등을 이장한 상태임.

기본적으로는 하늘공원에서 관리(하늘공원 선택 이유도 공원측에서 관리하기 때문) 하지만 지금도 막내아들이 명절 때 묘지를 방문하고 돌보고 있음.

5. 소결

1) 제사방식

제사방식은 크게 독립제사와 합제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집안 풍습에 따라 선택하고 있었다. 합제 방식도 집안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한다. 합제 대상도 부부의 경우 어느 한 쪽이 생존해 있을 때는 희생자를 독립제사 방식으로 추모하다가 합제하는 방식, 가족이 집단 희생된 경우는 가족 합제 방식이 나타나고 있었다. 미혼 또는 어린이 희생자가 부모와 함께 사망하면 부모와 합제하는 방식이 채택되고 있었다. 부모가 생존 후 최근에 사망 한 경우는 부모의 제사 날에 자녀(희생자)를 합제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특이한 사례지만 부친이 제사를 지낼 때는 합제를 했으나 자식에게 전승되면서 오히려 제사를 나누는 집안도 있다.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4·3유족으로서 함께 집안의 고통을 나누기 위함이다.

제사 날짜는 행방불명은 희생된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생일에 제사를 지내거나 또는 집에서 실종된 날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제사 주체 및 승계 과정

제사승계는 조부와 모친이 생존시에는 어린자녀가 제관으로 제사에 참석하지만 어린자녀가 군대 제대 또는 결혼 후에는 2세대가 직접 제사를 준비하고 주관하고 있었다.

4·3희생자 제사도 미혼이거나 후손이 없더라도 일반 가정집과 마찬가지로 남성 중심으로 승계되고 있다. 간혹 딸이 있더라도 양자(남성) 중심으로 제사를 승계시키고 있었다.⁸⁾ 향후 제사 승계 과정에서도 딸에게 승계시킬 의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단절을 감수하거나 수평이동, 양자 도입 등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다.

2세대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2세대 장남이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는 2세대 차남에 의해 봉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후 장남이 결혼하더라도 차남이 계속 승계할 예정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차남 승계는 1세대(부친)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 경우 2세대 형제간에 제사를 물려주고 마지막으로 물려받은 2세대 형제의 자식(3세대)이 제사를 승계하게 된다. 주로 집안의 협의를 거쳐 제사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부와 같은 항렬의 희생자와 자식 희생자가 함께 있을 경우 조부의 관점에서 큰아들 제사는 차남(2세대)이 지내고, 조부의 동생인 작은할아버지는 3남을 양자로 보내 제사를 승계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반대로 2세대에서 형제간에 제사를 나눴으나 2세대 장남 사망 후 2세대와 3세대가 혼재된 상태에서 원래 방식(나누기 이전)으로 돌아간 사례도 발견된다. 외손봉사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

향후 3세대 이후 제사 승계와 관련해서는 일부는 집안 풍습에 따라 3세대까지는 의무적으로 제사를 봉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다만 예비전승 주체와 협의 후 결정하려는 경향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3) 제사를 모시는 대상

제사를 모시는 대상은 삼촌에서 사촌형제, 5촌 당숙, 조부 등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특이한 사례는 당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 놓여있던 숙부가 희생된 경우 호적에 등재되고 숙모가 생존해 있으면 일반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하지만 숙모가 재혼한 경우는 다양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었다.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있었으나 당시 사망하고 숙모는 재혼 후 사

8) 전문가 조사과정에서 딸에 의한 승계도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망, 숙부(희생자)와 합제하는 중복 의례의 경우가 있었다.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숙모가 재혼하고 현재 생존해 있으나 숙모 사망 후 합제 의사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반대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숙부가 희생된 이후 숙모가 친정으로 귀가 했을 경우 앞으로도 합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식적으로 이혼한 경우는 합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형제(사촌 포함)지만 미성년이거나 여성으로서 미혼의 경우는 대부분 제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다만 집안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있고 그 가운데 직계 존속이 있으면 직계존속의 제사(조부모, 부모)를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합제하는 사례가 있다.

4) 양자⁹⁾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에게는 대를 잇기 위한 입양의 관습이 존재하지 않았다. 고려 시대에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관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이 성립되고도 이러한 관습은 그대로 유지되어 제사를 위한 양자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의 영향으로 성리학과 종법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아들만이 대를 이을 수 있고, 제사를 주재할 수 있다는 관념이 도입되었다(안문희, 2018 :2).

조선시대 양자 제도의 근원은 어디까지나 종계 계승의 표상인 제사를 위한 가본위 제였다. 양자는 동성동본의 어린이들 중에서 정하였으나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이성 불량의 원칙을 파기하여 이성 입양을 인정하게 된다(정기원·김민지, 19930 :71~72).

법률상에 나타난 양자는 민법 제정이전(1960년)에는 입양의 목적이 가계 및 제사승계가 목적이었으며 남계혈족인 조카뻘 남자를 입양했었다. 1990년 개정 민법에서는 부모를 위한 입양으로 변화하면서 가계의 승계를 위한 요소가 대폭 퇴색하였다(안재진, 2011 :82).

1958년 민법 제867조는 사후양자(死後養子)에 대한 내용으로,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 한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폐가(廢家) 또는 무후가(無後家)를 복흥하기 위해 전호주(前戶主)의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안문희, 2018 :3).

4·3희생자의 양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희생자가 장남인 경우 차남 계열 아들이 양자로 선정되는 경우, 희생자가 차남인 경우 장남 계열 아들이 양자로 선정되는 경우와 3남 계열 아들이 양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아들이 양자로 입적되지 않고 그 자손인 3세대를 양자로 올리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는 2세대가 생존해 있을 때 미리 재산 분배와 제사를 연동시켜 희생자 제사를 유지하려는 인식으로 여겨진다.

4·3희생자의 양자는 대부분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 집안 협의에 의해 족보상에서만

9) 현행 민법에서는 양자는 일반양자와 친양자로 구분함. 4·3희생자의 경우는 사후양자(死後養子)에 해당되며 호주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나 이미 폐가나 무후(無後)가 된 집안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선정.

양자로 기록되고 있다. 민법에 의한 일반양자가 아니라 집안 협의에 의한 사후양자 형식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43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계혈족에 의한 유족의 범위(4촌)를 벗어나고 있다.

따라서 제사와 분묘 관리를 조카(양자)가 담당하지만, 고모가 생존해 있음으로 인해 유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도 자주 발견된다.

5) 재산상속

과거에는 제사를 승계할 경우 토지를 분재하는 것이 관습이었으나 조사대상 가운데 분재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원인을 살펴보면 집안 직계 비속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세대 상속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3세대 승계과정에서 제사에 따른 분재를 검토하는 사례는 2건이 나타나고 있다.

6) 분묘 관리

원래 상태 유지, 당초 조성된 묘지를 현재까지 유지하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1차 매장지는 희생된 곳이나 주거지 인근에 임시 매장을 했었기 때문에 2차 매장이 필요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과정에서 임시 매장지가 멸실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한다.

제주지역의 별초문화가 변화하면서 자녀들에게 별초에 대한 부담을 넘기지 않으려는 부모 세대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1인 가구가 30%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되면서 별초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묘지 관리가 힘들어지는(한라일보 2017.10.07.) 현실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집안에 따라서는 가족묘지 안장 범위도 달라지고 있다. 문중이라고 표현되는 집안 묘역을 조성하는 사례가 일반적이지만, 일부에서는 제사를 모시는 직계 가족만(할아버지 이하 자손) 별도로 묘역을 조성하는 사례도 있었다.

7) 유족 지정 제도

현재 43특별법의 유족은 직계가 없을 경우 4촌 이내로 정하고 있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4촌 이내에 있는 유족일지라도 양자선임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제사를 봉해하는 가족이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형제(4촌 이내)와 남편까지 희생된 경우 며느리에 의한 봉제사 사례가 있었다. 이 또한 유족에서는 제외 된다.

이처럼 유족에서 제외되는 변수는 다양하다. 43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직계가 없는 경우에 대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방계혈족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안이 채택된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법 제정 취지를 오늘에 되살려 실질적으로 제사를 모시는 유족, 관습에 의해 3대까지 제사를 모시는 유족 앞에 놓인 현실을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유족 지정 범위를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창석(2002), 『濟州島 古文書 研究』, 도서출판 세림.
- 김혜화(2015), 「한국의 無緣故 시신 처리 정책의 개선방안 연구-일본 無緣社會와 비교하여」,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李在恩(2011), 「제주도의 조상제사와 기독교」,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창하(2004), 「濟州島 喪葬禮 節次에 나타난 ‘토롱’의 教育的 意味 研究」,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관용(2014), 「제주지역 분묘와 산담의 법리적 고찰」,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기원, 김민지(1993),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안재진(2011), 「국내법에 나타난 입양제도의 변천과정 분석 -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한국가족복지학』 제16권 4호.
- 안문희(2018), 「입양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요약본)」, 사법정책연구원.
- 김성봉(2016),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 통계청 2017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2017.11.7).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2013.06.23(제주신보)

2016.05.26(제민일보)

4·3 7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제주 4·3,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제2부

〈발표 3〉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 제사의례 연구

현혜경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 제사의례 연구 -4·3 희생자 명부를 중심으로¹⁾

현혜경(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²⁾

I. 서론

1. 들어가며

올해로 4·3 70주년이 되었다. 사건이 발발하고 2세대를 넘어 3세대, 4세대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을 직접 체험한 세대, 체험세대로부터 구전을 통하여 간접 체험한 세대가 공존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 문화적 기억에 기대는 후체험 세대에까지 이르렀다.³⁾

4·3이 반발하고 40주년이 되던 1989년 4·3의 개인적 경험과 기억을 광장으로 끌어내어 사회적 의미를 발생시켰던 집단적 기념의례가 치러진 지도 어느덧 30년이 흘렀다. 당시 집단의례는 개별화되어 있던 유족들의 의례와 민주시민세력들의 추모의례를 모으면서 사회적으로 큰 동력이 형성되었고, 4·3진상규명운동의 중요 자원이 되었다.

진정한 의미의 4·3진상규명이 이루어지려면 100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4·3의례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의미를 발생시켜야 하는 이때, 중요한 역사적 경험이기도 하였다. 특히 직접 체험 세대가 모두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에서 ‘희생’과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일이다.

현재 희생자에 대한 집단적인 기념의례는 4·3평화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3합동위령제로 모두 소급되는 과정을 거쳐 왔다. 한동안 정부의 사과와 특별법 제정 등으로 유족단위별 기념의례들을 비롯하여 문화단체 및 종교단체들의 기념의례 행사들이 증가하였다. 사회적 의미 발생이 확대되는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세대’라는 중요 변수를 만나면서 4·3기념의례는 박제화된 기억이 될 소지가 커졌으며, 사회적 의미를 발생시킬 수 있는 동력이 소실 될 위기에 놓였다.

본 연구는 지난 몇 달간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에

1) 이 글은 개념이나 분석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글로서 인용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syaron@hanmail.net

3) 권귀숙(2006)은 『기억의 정치』에서 체험세대 및 후체험세대의 개념 참조.

대한 기념과 기념의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현재 4·3이 ‘세대’라는 변수에 직면하여 기념의례에서 사회적 의미를 어떻게 발생시킬 것인지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현재 4·3무연고 희생자는 3천 537명(2018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⁴⁾ 당시 사망자 가운데 유족이 없는 희생자 수이다. 이들에 대한 기념의례는 매년 4·3평화공원 위패 봉안소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합동위령제가 전부이다. 오롯이 문화적 기억에만 기대어 이들 희생자에 대한 ‘죽음’의 의미 발생을 시켜야 하는데, 이 하나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의미가 증대할 수 있을 것인가? 사회적 의미를 증대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진다.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들의 시신처리과정과 정책, 잔여재산 처리 부분, 사회연결망 형성, 기념과 기념의례 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간 연구에서 수행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4·3무연고 희생자를 파악하던 중 4·3희생자 중에서 직계부존으로, 조카유족이 기념의례를 시행하고 있는 400사례를 파악할 수 있었고, 그 중 기념의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 164개 사례를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기념과 기념의례,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함의를 살펴보는 기초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가. 무연고 희생자 개념과 연구

무연고(無緣故)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혈통이나 정분 또는 법률상으로 맺어진 관계가 없다. 또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없음을 의미한다. 엄밀히 말하면 어떠한 후손도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기념 혹은 의례의 관점에서 보자면 기념 및 의례가 수행되지 않으므로 인해 무연고의 사회적 의미 발생이 크기 때문에 무연고가 후계 계승문제 보다는 기념 및 의례가 수행되지 않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4·3을 이해하는 맥락에서는 중요하다고 사려된다.

현재 무연고와 관련된 연구는 인물로만 본다면 전쟁 및 학살과 같은 재난 사망자, 탈북민들 등이 주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주제별로 본다면 무연고 사망자들을 둘러싼 시신처리 정책, 잔여재산처리, 개발과 무연고 묘 등이 주요

4) 2018년도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정기총회 자료집, 58쪽

연구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제 징용당한 사할린 무연고 희생자 및 2차 세계대전 당시 사망한 무연고 희생자의 시신처리에 대한 연구들을 비롯하여⁵⁾, 탈북민들과 같은 무연고 생존자들의 사회연결망 형성과 관련되어 주요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⁶⁾

4·3의 경우 무연고 희생자에 대한 현황이나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4·3무연고 희생자의 경우 향후 희생자들의 시신처리과정과 정책, 잔여재산 처리 부분, 사회연결망 형성, 기념과 의례문제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기념 및 의례의 관점에서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들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며, 첫 걸음으로서 4·3 직계 부존 희생자들에 대한 기념의례를 통하여 향후 발생할 4·3무연고 희생자들에 대한 기념의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직계 후손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3촌-5촌-7촌으로 이어지는 기념 및 의례는 한편으로는 무너진 사회연결망을 재편성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 기간 후에는 4·3의 기념문제가 약화되는 과정이 되기도 하다.

나. 무연고와 기념의 문제

기념에 대한 문제는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이루어진 행위로, 고대 종교와 연결되면서 역사적으로 매우 폭넓게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 기념에 대한 문제는 4·3사건과 같이 재난과 기념에 대한 이론적 맥락으로 제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재난과 기념에 대한 큰 이론적 줄기는 재난을 후대에 누가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기억의 정치로 논의되어져 왔다. 이 논의의 선구는 모리스 알박스(M. Halbwachs, 1992)와 같은 학자들이 있고, 한국사회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알박스는 기념이 과거를 상상적으로 재현하고 과거의 사고와 기억의 재창조가 가능해진다고 봄으로서 기억의 정치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슈워츠(Schwartz)는 기억의 경로와 매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빠져 있음에 주목하여 기억의 세대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 부분은 5·18과 4·3등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아스만 부부(Assmann, 2003)는 개별 기억들이 통합되고 갈등하면서 집단 기억을 형성, 전수,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하여 각종 텍스트, 신화, 종교적 제의, 기념물, 기념장소 등 다양한 기념 매체 분석을 통

5) <http://www.hani.co.kr> 및 현대불교신문(2002. 10. 11.)참조

6) 한명자(2012)의 근거이론에 입각한 무연고 사람들의 사회연결망 형성과 의미를 분석한 적이 있는데, 이 이론적 관점은 본 연구의 기념과 사회연결망 형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된다.

하여 기억이 제도적으로 공고화되고 조직적으로 전승되는 형식을 규명하였다. 한편 레논과 폴리(2002)등은 죽음이나 재앙, 잔악행위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장소나 사건들을 찾아보고 교훈을 얻는 다크투어의 개념을 발생시켰으며, 20세기 말 21세 초에 두드러진 후기 근대 현상으로 규정하였다.

본 연구는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에 대한 기념의례를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사려 된다. 하나는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에 대한 기념의례에서 방계혈족 세대 간 계승을 통하여 직계부존 희생자의 사회연결망이 어떻게 복원되고 있으며, 그것이 세대를 통해 기념되는 매커니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곧 다가올 미래의 기념문제로서 이런 직계부존 희생자들이 무연고 형태로 진행될 경우 사회적 의미 발생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가이다.

II. 조사 개요 및 현황

본 연구는 4·3희생자 명부 중 조카 유족 400사례 중에서 164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 수집은 4·3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 명부⁷⁾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는 4월-8월 동안 진행하였다. 명부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은 4·3유족회 등의 도움을 받아 보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64개의 사례를 찾아내는 것으로 완성하였다. 수집자료의 희생자 인정 년도별로는 2002년 26건, 2003년 38건, 2004년 13건, 2005년 26건, 2006년 36건, 2007년 12건, 2011년 4건, 미기재 9건이다.

164명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의 출생년월일은 <표 1>과 같다. 1920년대 생들이 가장 많이 사망한 것을 보아 당시 청년층 희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 이 경우 결혼 여부는 중요 변수가 된다. 희생당시 미혼인 경우 무연고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표 1>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 164명에 대한 생년분포

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명부의작성 등) ①실무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 명부에는 희생자 및 유족신고(별지 서식)에 따라 희생된 경위, 제사와 분묘관리 등의 사실관계를 증빙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계	1890년	1900	1910	1920	1930	1940	오기재
164명	5명	6명	17명	95명	36명	3명	2명

164명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의 경우 <표 2>와 같이 1948년에 가장 많이 희생당하였다. 이는 4·3사건의 집중적 희생시기와 일치한다.

<표 2>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 164명에 대한 희생년도

계	1948	1949	1950	1951	1952	미기재	오기재
164명	76명	49명	25명	1명	2명	9명	2명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 164명에 대한 성별은 <표 3>과 같이 여자 15명, 남자 14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희생자 수가 적었다기 보다는 기념의례에서 여성 사례 발견이 어려웠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이유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 차후 연구가 필요하다.

<표 3>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 164명에 대한 성별

계	여자	남자
164명	15명	149명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 164명 가운데 사망자는 103명, 행방불명은 61명으로 나타났다(<표 4>참조). 이들에 대한 시신처리 및 장례 문제, 묘 설치, 기념의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표 4>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 164명 희생형태

계	사망자	행방불명
164명	103명	61명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 164명의 주소지별 분포는 <표 5>와 같다. 제주시, 애월읍, 조천읍, 한림읍 등이 많았다. 북제주에 해당 주소지 분포가 많았다.

<표 5>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 164명에 대한 주소지별 분포

계	표선면	남원읍	대정읍	서귀포시	성산읍	안덕면
164명	3명	5명	2명	4명	2명	4명
	애월읍	제주시	조천읍	구좌읍	한경면	한림읍
	38명	53명	31명	5명	1명	16명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 164명에 대한 제사 계승 현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이 희생자의 조카 승계가 가장 많고, 희생자의 형제 혹은 사촌형제, 외사촌 형제에게서 조카 혹은 조카손으로 넘어가는 계승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표 6>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 164명에 대한 제사 승계
현황(유족신청기준)

계	희생자의 형제	희생자의 사촌형제	희생자의 외사촌형제	희생자의 조카	희생자의 조카손(종손)	희생자의 증손	희생자의 외조카
164명	2명	12명	1명	128명*	18명	1명	2명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 164명의 제사를 승계하고 있는 유족들의 연령은 <표 7>과 같이 2018년 기준으로 80대가 23명, 70대가 47명, 60대가 35명, 50대가 38명, 40대가 12명, 30대가 3명, 20대가 3명 등으로, 대개 50~70대의 조카들이 맞고 있으며, 4·3을 경험하지 않았던 1960년대 이후 출생 이후 세대들에게도 기념의례가 계승되고 있다. 이는 향후 철저하게 문화적 기억에 기대어 4·3을 기억하는 체제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표 7>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 164명의 제사를 승계하고 있는
유족들의 출생년도

계	1930 년대	1940 년대	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오기재
164명	23명	47명	35명	38명	12명	3명	3명	1명	2명

<표 8>과 같이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 중 제사를 여성이 승계하는 경우도 11명이나 되고 있다.

<표 8>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 164명의 제사를 승계하고 있는 유족들의
성별

계	남성	여성	미기재
164명	152명	11명	1명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 164명에 대한 제사일 분포를 살펴보니, <표 9>와 같이 가을, 겨울 사이가 많았다. 1948년 11월 희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사일을 정하는 것은 행불인의 경우 생일날에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되었으며, 혹은 곳을 통해 제사일을 받거나, 집 나간 날 혹은 행방불명 즈음을 제사일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실제 사망일에 제사를 지내는 125명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므로, 이 안에서도 세부 조사를 한다면 구체적인 제사 기념일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표 9> 4·3무연고(직계부존)희생자 164명의 제사분포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제사는지 남	미기재
164명	12명	4명	12명	3명	2명	2명	2명	6명	16명	10명	27명	27명	19명	22명

제사의 형태도 사찰에서 모시면서 불교의례를 행하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유교식 제사를 통해 모시는 경우들이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조사는 차후의 일이 될 것이다(<표 10>)참조.

<표 10> 4·3무연고(직계부존)희생자 164명의 제사

계	사망일	생일날	집 나간	행방불명 즈음	곳을 통해 받은 날	미기재
164명	125명*	14명	1명	1명	1명	22명

묘지 문제와 관련하여 묘를 관리하고 있다고 한 사람들은 101명의 유족, 묘가 없다고 응답한 10명, 비석만 세워두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3명, 시신을 미수습 하여 실질적으로 묘가 없는 경우 3명, 미기재 47명이었다. 묘가 있는 경우도, 가묘, 가족묘지, 공동묘지 등의 형태로 나뉘고 있다(<표 11>)참조.

<표 11> 4·3무연고(직계부존)희생자 164명의 묘지 상황

계	묘있음	묘없음	비석만	시신 미수습	미기재
164명	101명	10명	3명	3명	47명

Ⅲ. 4·3희생자 명부 분석과 제사의례의 양상과 분석

4·3희생자 명부를 분석하면서 어떠한 형태 혹은 유형으로의 분류가 가능한가를 모색한 결과 희생자가 남성, 희생자가 여성인 경우를 두고 부계, 처계, 모계 계승 형태로 구분이 되는 것이 드러났다. 제사의례의 전승 양상은 ① 희생자가 남성으로 그 제사를 부계에서 전승하는 경우 ② 희생자가 남성으로 그 제사를 처계/모계에서 전승하는 경우 ③ 희생자가 여성인 경우 그 제사를 부계(夫/父)에서 전승하는 경우 ④ 희생자가 여성인 경우 그 제사를 처계/모계에서 전승하는 경우이다. 제한적인 사례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① 희생자가 남성으로 그 제사를 부계에서 전승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② 희생자가 남성으로 그 제사를 모계에서 전승하는 경우이다. 희생자가 여성인 경우는 부계, 처계, 모계 상관없이 그 전승 사례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여성 희생자에 대한 그 전승과정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남성 전승에 비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사려 된다.

1. 희생자가 남성으로 그 제사를 부계에서 지내는 경우

희생자가 남성으로, 그 제사를 부계에서 지내는 경우는 그 세부 사례가 더욱 다양하다. 160여개의 사례를 통하여 나타난 큰 갈래는 ① 희생자의 직계 혈족이 일정기간 동안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다가 직계혈족의 부존으로 방계 혈족으로 그 제사가 이동하는 경우 ② 희생자의 직계 혈족의 부존으로 아예 방계 혈족으로 제사가 이동하는 경우들도 나뉜다. 결과론적으로는 희생자의 직계부존으로 방계 혈족으로 그 제사가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가. 남성 희생자→직계혈족(남성)→방계혈족(남성) 제사 계승

남성 희생자의 제사가 직계 혈족이 지내다 방계 혈족으로 제사가 계승되는 경우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희생자의 생존한 부모들이 그 제사를 지내다 희생자의 형제 혹은 조카로 계승시키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희생자의 생존한 직계혈족 여성이 그 제사를 지내다 희생자의 형제 혹은 조카로 계승한 경우로 나뉘고 있다. 이 경우 방계 혈족 중 조카인 경우 양자로 입양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직계 혈족이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 및 도외에 거주하여 제주도내 방계혈족으로 계승되는 경우들도 나타

나고 있다.

1) 희생자→생존한 직계혈족(부친, 모친)→방계혈족(희생자 남성형제)→방계혈족 후세대(남성, 양자 포함)계승

- ① 희생자의 생존한 직계혈족(부친)이 제사를 지내다 희생자 형에게 승계, 형은 자기 장남 아들에게 계승하였다가 장남 사망으로 차남 승계
- ② 희생자의 생존한 직계 모친이 제사를 지내다가 희생자의 조카 손주에게로 계승한 경우

이 경우 희생자의 생존한 직계혈족 부모들에 의해 부모들이 생존기간 동안은 희생자의 제사를 모시다, 희생자의 형제 및 조카에게로 계승하는 경우로 부모 생존 시 희생자의 제사 승계에 대한 일련의 전승과정이 정립되었다.

2) 희생자→생존한 직계혈족(여성)→방계혈족 후세대(남성, 양자 포함)계승

- ① 1세대 형이나 동생 사망으로 그 처가 희생자의 제사를 모시는 경우
- ② 1세대 형이나 동생 사망으로 그 처가 희생자의 제사를 모시다 사망 후 방계혈족 후세대(조카, 조카손)로 계승한 경우
- ③ 희생자가 미혼상태로 행불, 딸은 출생신고를 못하여, 생존한 직계 딸이 있음에도 남자 조카가 계승한 경우
- ④ 희생자가 사망 후 부인이 재가하면서 그 딸이 희생자 남동생 호적에 오르고, 남자 후손이 계승한 경우
- ⑤ 희생자 부인의 이혼과 부계 승계 등

이 경우는 희생자의 생존한 처가 희생자의 제사를 모시다 방계혈족 후세대(조카)에게로 계승시키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희생자의 딸이 생존한 경우라 할지라도 희생자의 제사 계승은 방계혈족 남성 후세대로 계승되는 과정을 보였다. 때에 따라 희생자의 딸이 방계혈족의 호적에 올라, 모시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는 방계혈족 남성 후손의 부재 시 이루어지고 있어, 결국은 부계 방계혈족으로 귀결되고 있다.

3) 희생자→생존한 직.방계혈족의 도외, 국외 거주→제주 거주 방계혈족 후세대 계승

- ① 희생자의 가족이 거의 모두 사망 직계가 2명 존재하나 다른 지역으로 이민, 생사 확인할 길 없어, 방계가 모시는 경우

이 경우는 희생자를 비롯하여 상당수 가족의 전멸 등으로 생존한 직계혈족들이 제주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제사계승 여력이 없는 경우 제주 거주 방계 혈족들이 제사를 계승한 경우이다.

전체적으로 희생자가 남성의 경우, 생존한 직계혈족이 있는 경우는 직계혈족이 제사를 계승하여 지내다가 방계혈족으로 계승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은 희생자에서 직계혈족의 생존기간 동안은 제사 계승 과정을 거치나, 근원적으로 희생자의 아들 부존으로 인하여 방계혈족 남성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세대로 보았을 때에는 희생자를 기준으로 4세대인 조카 손주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 남성 희생자→방계혈족(남성) 제사 계승

직계부존 무연고 희생자 제사의례 전승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남성 희생자→생존한 방계혈족의 계승이라는 공식이다. 이 경우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① 희생자의 생존한 형제, 누이, 형수, 제수 등의 방계혈족을 거쳐 방계혈족의 후세대로 계승되는 경우들이 있으며, ② 바로 희생자의 생존한 방계혈족 조카로 이어져, 방계혈족의 후세대로 계승되는 경향들이 있다.

- 1) 희생자→생존한 방계혈족 형제(남성 형제)→방계혈족의 후세대(남성 양자포함) 계승

- ① 희생자의 동생이 지내다가 조카, 조카손으로 넘어간 경우
- ② 1930-40년생으로 형이나 동생이 희생자의 제사를 모시는 경우
- ③ 희생자인 형의 제사를 동생들이 윤제로 지내다가 사망 후 방계혈족 후세대(조카)가 제사를 모시는 경우
- ④ 희생자의 방계혈족인 4촌 형과 동생이 제사를 지내다 사망 후 4촌 동생의 아들이(희생자의 5촌 조카)의 제사를 계승한 경우
- ⑤ 희생자 사후 형이나 동생(혹은 문중 어른신)이 자기 아들을 양자로 입적하여 제사를 승계한 경우
- ⑥ 희생자의 직계 딸이 존재하지만, 희생자의 남동생이 제사를 모시다가 사망

후 남동생 아들이 제사를 계승한 경우

- ⑦ 희생자 및 희생자 처 사망 후 남동생이 모시다 부모까지 돌아가시자 모두 남동생이 계승한 경우
- ⑧ 희생자의 생존한 방계혈족 동생이 모시다 장남이 아닌 차남 및 3남으로 승계한 경우

이 경우는 희생자의 생존한 남성형제 등 방계 혈족의 같은 촌수에서 희생자에 대한 제사를 모시다가 사망 후 방계혈족 후세대로 제사가 계승되는 것으로 3촌에서 5촌 범위로 넘어온 것으로 희생자의 제사의례가 3세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직계 딸이 존재함에도 희생자의 남동생이 제사를 모시다 남동생 아들로 제사를 계승한 경우를 통해서도 부계 중심의 연결망이 복원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2) 희생자→생존한 방계혈족(남성 조카)→방계혈족(남성 조카손)의 후세대 계승

- ① 희생자의 형 및 동생 사망으로 동생 아들인 희생자의 조카 및 조카 손이 희생자의 제사를 모시는 경우
- ② 희생자 사후 후 방계혈족 및 그 후세대가 희생자와 사촌녀의 제사를 모시는 경우
- ③ 1940년대 생으로, 실제로는 희생자의 친자였으나 호적상 희생자의 형제 양자로 들어가 조카로서 제사를 승계하다가 그의 아들(조카손)에게 제사를 승계한 경우
- ④ 희생자의 친자가 희생자의 형이나 동생의 양자로 입적하여 조카로서 제사를 승계한 경우

이 경우 희생자의 생존한 방계혈족의 조카가 희생자의 제사를 희생 후 모시게 된 경우로, 바로 2세대 제사로 전승된 경우이다. 이들 중에는 2세대이지만 4·3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도 존재하며, 3세대 후세대에게 이르는 경우들도 있다. 또한 실제 직계혈족임에도 출생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부친이 사망하여 방계혈족에 입양되는 경우는 드물게 직계혈족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겠다.

3) 희생자→방계혈족(양자)→자손부재 무연고

- ① 희생자의 양자로 입적되어 제사를 지내다 자손 부재로 인하여 모든 묘를 정리하고 양지공원으로 이동한 경우

이 경우가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다. 희생자의 양자로 입적된 방계혈족이 후손 승계가 어려워지자, 무연고를 대비하여 가족 묘지 등을 정리하고 양지공원으로 이동한 경우이다. 4세대까지는 집안의례에서 봉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지제 및 후손 계승이 어려워지거나 그 의미가 점차 희미해질 때,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에 대한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생산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다. 남성 희생자→방계혈족(여성)→방계혈족(남성) 제사 계승

희생자의 제사가 생존한 방계혈족 여성들에게 계승되었다가 방계혈족의 후세대로 계승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① 남성 희생자에 대한 제사의례를 생존한 방계혈족 누나 혹은 여동생이 제사를 계승하다 방계혈족 남성 후세대로 계승되는 경우 ② 남성 희생자에 대한 제사의례를 생존한 남자형제의 형수, 제수 등이 제사를 계승하다가 방계혈족 남성 후세대로 계승되는 경우들이 나타났다.

- 1) 희생자→생존한 방계혈족 여성(누나 여동생)→방계혈족(남성)의 후세대 계승

- ① 희생자의 누나가 살았을 때는 누나가 승계하다가 누나 사망 후 희생자의 방계혈족으로 계승

이 경우는 남성 희생자를 모실 남성 형제의 부재로 방계혈족인 누나가 모시다가 누나 사망 후, 방계혈족의 남성 조카에게로 제사가 계승된 경우이다. 이는 방계혈족의 남성 부재로 이루어졌다고보다는 4촌 형제보다는 친누나가 생존해 있으므로 친누나 생존까지는 제사가 친누나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친누나의 결혼 여부가 부계 계승인지, 처계 계승인지, 달라질 수 있어, 명부 문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 2) 희생자→생존한 방계혈족 여성(형수, 제수, 며느리)→방계혈족(남성) 후세대 계승

- ① 희생자의 형수 등이 제사를 모시다가 자손이 없어서, 다른 방계로 이동하는 경우
- ② 희생자의 조카며느리(1960년대 생)가 희생자의 제사를 모시다 희생자의 조카손인 아들에게 제사를 이행하는 경우
- ③ 희생자의 형수, 제수 등이 제사를 지내다가 아들이 18세(성인) 되거나 결혼하여 제사 승계하는 경우
- ④ 희생자의 제사를 조카며느리가 봉행하다 아들에게 승계한 경우

이 경우, 희생자의 형수, 제수, 며느리의 제사 계승은 남편 부재 혹은 같은 세대 남성 방계혈족이 모실 수 없는 여건 등으로 인한 것은 여형제들의 경우와 같으나, 다음 세대 계승에 있어서는 남성형제의 사망과 상관없이 제사를 계승할 수 있는 남성 후세대가 결혼을 하면 계승시키는 경우들도 나타나고 있다.

2. 희생자가 남성으로 그 제사를 처계/모계에서 지내는 경우

가. 남성 희생자→방계혈족(여성)→처계/모계혈족(여성/남성) 제사 계승

희생자가 남성으로 그 제사를 계승할 남성의 부재는 방계혈족 여성으로 계승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방계혈족 여성으로 계승은 여성의 결혼 여부에 따라 부계 혹은 처계의 입장이 된다. 만일 결혼한 여성이 제사를 지내고 있다면 이것은 처계혈족이 제사를 맡게 되는 경우이나, 후세대로 가면 모계혈족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 경우는 ① 남성 희생자를 생존한 직계혈족 여성이 지내다가 후세대 여성으로 계승되는 경우 ② 희생자의 생존한 방계혈족 여성이 지내다가 모계혈족으로 전환되는 경우 ③ 남성희생자의 생존한 외조카가 지내어 모계혈족 등으로 계승된 경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1) 희생자→생존한 직계혈족(희생자의 처)→직계혈족(여성) 후세대 계승
- ① 희생자의 처 등이 제사를 지내다가 딸로 승계한 경우로, 호적상 조카지만, 실제 딸이 수행한 경우
- ② 희생자의 형수, 제수 등이 제사를 지내다가 아들이 없어 딸로 계승한 경우
- ③ 희생자의 처가 제사를 모시다가 조카로 입적된 실제 딸이 제사를 계승한

경우

이 경우 남성 희생자의 생존한 직계혈족인 희생자 처, 형수 등이 제사를 지내다가 아들 부재로 인하여 딸로 승계된 경우까지는 부계 계승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딸이 결혼을 하고 제사를 지낼 경우는 처계로, 딸의 자식들로 다시 넘어갈 경우는 모계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딸의 결혼여부가 제사 계승방식에서 전환점에 놓인다.

2) 희생자→생존한 방계혈족(여성)→모계혈족(남성) 후세대 계승

- ① 희생자의 여형제(누나, 여동생)이 제사를 지내다 사망 후 여형제(누나, 여동생)의 아들인 외조카에게 계승되는 경우
- ② 희생자의 여동생이 제사를 승계하다 여동생 아들에게로 계승되었다가 외재 종손으로 계승한 경우

이 경우는 남성 희생자의 생존한 여형제들이 제사를 지내다 여형제의 아들로 승계된 경우로 처계에서 모계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3) 희생자→생존한 외조카(남성) 후세대 계승

- ① 희생자인 외삼촌의 제사를 외조카가 모시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희생자인 외삼촌을 외조카가 모시고 있는 경우로 제사 주관자 입장에서는 모계혈족의 제사를 지내는 경우이다.

3. 희생자가 여성으로 그 제사를 부계(남편 쪽)에서 지내는 경우

희생자가 여성인데 그 제사를 부계(남편 쪽)에서 생존한 방계혈족 후세대 계승하는 경우는 결혼관계 여부가 핵심이다. 아래 사례는 사실혼 관계였으므로 남편 쪽 방계혈족들이 제사를 계승한 경우이다. 이는 앞의 남성 희생자→방계혈족(남성)과 동일한 맥락 속에 있다.

1) 여성 희생자→생존한 방계혈족(남성 형제)→방계혈족(남성)후세대 계승

- ① 희생자가 사실혼 관계 속에서 사망, 사실혼 관계의 남편 동생이 제사를 모시다 그 자식에게로 계승한 경우

4. 희생자가 여성으로 그 제사를 부계(아버지 쪽)에서 지내는 경우

1) 여성희생자→생존한 방계혈족(남성 형제)→방계혈족(남성)후세대 계승

- ① 희생자가 부친의 여동생으로 고모의 제사를 부친이 지내다가 남자 조카(부친의 아들)가 모시는 경우
② 희생자가 부친의 누나로 부친이 제사를 지내다 고모의 제사를 남자 조카가 모시는 경우

여성 희생자에 대하여 남성 형제가 제사를 지내다가 남성 조카로 계승된 경우는 조카가 고모의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제사주관자 입장에서는 부계의 방계혈족에 대한 제사가 된다. 이 경우 여성희생자가 미혼일 가능성이 높다.

5. 희생자가 여성으로 그 제사를 처계/모계혈족에서 지내는 경우

1) 여성희생자→생존한 방계혈족(여성 형제)→방계/처계/모계혈족 후세대 계승

- ① 희생자가 모친의 여동생으로 이모의 제사를 여자 조카(모친의 딸)가 모시는 경우

이 경우는 여성 희생자를 생존한 여성 형제가 제사를 지내다가 여성 형제의 딸로 계승된 경우로 이는 외조카가 이모의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제사주관자 입장에서는 모계혈족에 대한 제사가 된다. 즉 부계혈족에서 처계혈족, 그리고 모계혈족으로 제사의례가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IV. 4·3무연고(직계부존)희생자 제사의례 특징

1. 사회연결망의 복원

4·3희생자 명부 164개의 사례를 통하여 드러나는 몇 가지 중요한 해석의 지점들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지점은 직계 후손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 즉 해체된 가족 공동체 속에서 희생자에 대한 기념과 기념의례가 끊어진 계보를 연결하고, 가족공동체를 복원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연결망을 복원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추론된다. 기본적으로는 ‘희생자→방계혈족 남성’으로의 계승이라는 구조를 가졌지만, 실제 계승과정에서는 더욱 다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얼마동안 희생자의 직계혈족이 생존한 경우는 직계혈족에 의해 정비과정을 거친 후 방계혈족으로 이어졌는데, 대개의 직계혈족은 부모였다. 이 말은 미혼으로 희생되어, 계승할 자식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방계혈족으로 계승된 경우 3, 5촌까지는 계승의 여지가 있지만, 그 이후는 지제 등 점차 기념의 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희생자에 대한 죽음의 의미 발생이 약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체험세대의 기념은 기제사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멜랑콜리한 기분을 경험하고 치유하거나, 상생하거나, 분노하는 역동적 과정을 거치지만, 후체험 세대로 넘어와서 기념은 그러한 역동적인 과정이 생략된다.

여성 희생자의 경우 결혼 여부가 기념과 기념의례에서 크게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혼 여성 희생자의 경우는 남편 쪽 방계 혈족에 의하여 기념 및 기념의례가 전승되는 구조이나, 미혼 여성 희생자의 경우는 생존한 부모 혹은 남녀형제들 및 그 후손들에 의해서 기념의례가 전승됨에 따라 후대 제사주관자에 따라서는 부계 방계혈족이 아닌 모계혈족이 제사를 지내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다.

직계부존으로 인한 기념의례는 방계혈족으로 다시 방계혈족의 부존은 처계/모계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 기념의례는 일정기간 동안 가족 및 사회공동체의 연결망을 복원하는 긴 여정을 가져왔다. 그러나 향후 그러한 성격이 유지될 지는 미지수이다. 점차 개인의례는 소멸 앞에 놓여있으며, 4·3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점차 후세대들에게는 아련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2. 여성희생자에 대한 제사와 기념의 문제

4·3무연고(직계부존)희생자 중 여성사례는 164개 사례 중 15건에 불과하였고, 그 기념과 기념의례를 파악하는데 제한적이었다. 여성 희생자의 경우 그 제사 전승 경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여성의 결혼이 기념의례 형성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교식 의례가 가부장제 가족공동체를 복원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음에도, 여성 희생자를 중심으로 기념의례를 통하여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는 차후의 세부 연구가 필요하다.

3. 기념공간을 대신한 기념의례

기념의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념 공간에 대한 것이다. 기념공간의 부재는 상대적으로 기념의례에 기대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다. 분석한 164명 중 103명은 사망자로 61명은 행방불명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 이 중 묘 관리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경우가 63명이 되고 있다. 묘가 없다고 기재한 경우도 10명, 비석만 있다는 경우도 3명,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였다는 경우도 3명으로 16개 사례는 확실히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묘가 없다는 것이다. 기념공간이 부재함에도 그나마 4·3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는 기념의례였다고 볼 수 있다. 기념공간의 부재를 기념의례를 통하여 그 의미 발생을 시켜왔다는 것이다. 또한 인적동력이 구성될 수 있었다.

이제 체험세대의 기념의례가 점차 문화적 기억에 기반 기념의례로 전환될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기념의례에 대한 특징들을 점차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념공간, 기념시간, 기념상징, 기념담론 등 분석해야 한다.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의 경우, 기념시간에서 대개 사망일을 기준으로 시행하지만, 사망일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생일날을 대체 기념시간으로 사용한다거나 혹은 무속의 힘을 빌려 그 시간을 설정하기도 한다. 이런 상징들과 담론들이 무엇을 의미하여 왔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속연구를 통하여 문화적 기억에 기댈 수밖에 없는 후세대를 위한 장치와 결집매개가 필요하다.

V. 결론

이번 조사연구는 조카 유족들이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에 대한 ‘희생’

의미를 어떻게 가족공동체 안에서 그 의미를 형성하여 왔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현재 3천5백여 명의 4·3무연고 희생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묘지와 같은 기념공간 및 제사와 같은 기념의례에 대한 경로 분석이 없다. 사회적으로 그들에 대한 ‘죽음’의 의미를 형성하는 것은 4·3진상규명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체험세대는 사라지고 후세대는 문화적 기억에 기대어 진상규명운동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이다. 4·3이 70주년이 되어 3~4세대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누가 4·3을 어떻게 기억해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4·3희생자라고 명명하여 모두를 같은 양상, 같은 이름으로 특징지을 것이 아니라, 개별 이름을 불러주고 개별성을 드러내어 그 다양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결집된 사회적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지금 시점에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일 것이다.

<참고문헌>

- 권귀숙(2006), 『기억의 정치』, 문학과 지성사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 『4·3희생자 명부』.
- 제주4·3희생자유족회, 『2018년도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정기총회 자료집』.
- 한명자(2012), “무연고 북한 이탈 청소년의 사회연결망 형성과 의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논문.
- 현대불교신문(2002.10.11.) “무연고 희생자 위패 및 유골 40만기 환국”.
- Assmann, A.(1999), Erinnerungsräume, Verlag C.h.Beck oHG(변학수 외 (2003),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 출판부)
- Halbwachs, M.(1992), On Collective Memory, ed and tr. by Lewis A. Cos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hwartz, B.(1996), “Memory as a Cultural Syste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1. No.5

<http://www.hani.co.kr>

4·3 7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제주
4·3,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논의를 위한 제언

논의를 위한 제언

1. 기본방향

가. 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에 대한 인식 전환

- 대통령은 국립대전현충원 관계자로부터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셔서 자녀도 없고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서 가족이 없는 분들의 무연고 묘소가 많다’는 설명을 듣고 나서 무연고 묘지가 몇 기가 있는지 등을 묻고 헌화.
- 이어 ‘모든 무연고 묘소를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기억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가에 헌신했던 믿음에 답하고, 국민이 국가에 믿음을 갖게 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일 것’이라고 강조(연합뉴스, 2018.06.06.).
- 제주43(무연고)직계부존 희생자는 대부분 청년기에 희생됨으로서 직계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음.
- 어린이와 결혼 전 여성의 경우도 많은 희생을 당했음에도 현재는 이름도 없고 기억되지도 않는 현실에 놓여 있음.
- 이처럼 직계존속이 없다는 이유, 당시 관습에 의해 추모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억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음.
- 작은 이름 하나, 짧은 생애일지라도 소중하게 불러주고 기억할 때 진상규명은 더욱 가치를 지니게 됨.
- 과거사 기억의 방식을 성인 남성 중심에서 성평등, 생명의 소중함, 인간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재해석하는 기회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음.

나. 실질적인 의례 주체의 유족 범위 포함

-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에 따르면 호적부에 오르지 못하거나 호적 정정을 하지 못해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양자·양녀는 5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제주新보, 2018.05.01.).
- 실질적으로 제사와 분묘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43유족으로서 시대의 아픔을 공유하고 전승하는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층위가 존재함.
 - 대표적인 사례가 후손이 없는 며느리, 풍속에 의한 양자, 조카(5촌 조카 포함)등

-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필요함. 제사 및 분묘의 전승과정을 면밀한 파악한 후 관련 법률 개정 등으로 심리적 위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보통 3대까지 봉제사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희생자 기준 3대까지 유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

2. 추모의례

가. 추모의례의 다양화 및 공동체 의례의 강화

- 제주에는 신당이라는 마을별 당체계가 존재하고 있음, 4.3 의례의 경우 국가 의례와 사건별 의례, 마을별 의례가 병행되고 있음.
- 당신앙의 사례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문화의 전승은 주체와 공간이 준비되고 의미가 부여되어야 전승이 유지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 마을별 사건별로 추진 되는 의례를 확대 강화시키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
- 기준이 없이 마을별 사건별로 건립되는 위령제단을 방지하고 향후 관리의 문제를 연계시킨 4.3희생자 사건별·마을별 위령제단 조성 지침 마련 필요.
- 기 조성된 위령 제단은 현재 마을별·사건별 유족회가 지속적인 관리와 추모가 발생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유도함.

3. 묘지관리

가. 공동묘역 조성 및 관리

- 제주도의 별초 문화는 가족 구성원 자체가 1인 가족 단위로 변하고 삶의 공간 또한 도외로 바뀌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묘지 관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유족3세대(최초 의례 기준)로 넘어가면서 제사와 묘지관리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됨.
- 섬이라는 공간의 특성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신규 가족묘지 조성도 힘들어 질 것으로 여겨짐. 이미 조성된 개인 묘지의 경우도 각종 개발로 인해 파묘를 해야 하는 상황임.
- 공공의 영역에서 묘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다만 사건의 발생 배경이나 미래에 교훈적 가치, 유족의 현실적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구 추모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조성 및 관리주체는 5·18과 3·15의 사례처럼 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향후 국립묘지로 승격 여부는 별개의 사안임.
- 1993년 10월에는 3·15의거기념사업회 창립총회가 있었으며, 1994년 5월에 3·15의거 성역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1996년 1월에 3·15 성역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1998년 3월 총부지면적 43,390평 규모의 3·15성역공원 조성공사에 착공하여 2003년 3월까지 이 공사를 마무리(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 4·3희생자 공동 묘역 조성시 추정 인원은 향후 희생자로 될 예상 인원을 포함 하더라도 15,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여겨짐. 이 가운데 전체 희생자의 5.4%(800여 명)를 차지하는 어린이와 규모를 확인 할 수 없지만 여성(?)을 제외, 또한 표석이 세워진 행방불명자비(3,895기, 봉안실 납골 400여기, 제주시 충혼묘지 안장 562명을 제외하면 실제 필요한 공간은 최대 9,000명 정도로 추정 할 수 있음.
-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유족(가족 묘지에 안장)과 공동 묘역에 안장을 원하는 경우를 구분하면 실제 공동 묘역에 안치될 인원은 더욱 적어질 것으로 예상됨.
- 공동 묘역 조성 방법은 최근 장사 문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납골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짐.
- 봉안시설 중 봉안당은 봉안묘나 봉안탑 등에 비해 작은 공간에 많은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어 안장수요를 충족시키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음(김성봉, 2016, 국회입법조사처).
- 대상 공간 또한 현재의 4·3평화공원내 봉안관(4·3유해발굴사업에 의해 발굴된 400여기의 유해 봉안)을 증축하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 현재 위패봉안실은 방문객들의 추모 공간 및 공적 의례의 영역으로 두고 유족의 개인 추모 공간을 별도로 조성함으로써 유족들의 향시 참배가 가능하도록 함.
- 실제 위패 봉안실의 경우 유족들이 제사 등 개인 의례를 지내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방문객들에게 정서적 위화감을 제공하는 사례도 있음.

나. 테마형 추모 공간 조성

- 추모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와 여성 등에 대한 별도의 추모 공간 조성
- 제주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장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 방문객 눈높이에서 추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다. 제주4·3평화공원 기능의 다양화

- 현재의 기능에 덧붙여 위령제단 및 위패봉안, 유해봉안, 각명비, 행방불명자비로 구성됨.
- 장묘문화를 이끌어 가는 미래지향적 추모 공간
- 묘지라는 개념에서 과거와 미래의 소통 공간으로 변화
- 방문객들에게 사실적 교훈을 전달하는 열린 공간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handwriting or typing.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